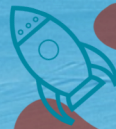




# 쿠팡은 어떻게 무권리의 위험 현장이 되었나

쿠팡 집단감염,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coupang**  
Color Your Days

2020년 9월 28일(월) 오후1시 인권재단 사람 한터홀  
주최 쿠팡 노동자 인권실태조사단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  
문의 [coupang.basicrights@gmail.com](mailto:coupang.basicrights@gmail.com) 후원 ○▽△음 인권재단사람

<b>I. 서론</b>	<b>4</b>
1.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고는 인재이자 인권의 문제	5
2. 조사개요	7
<b>II. 코로나19초기 발생과정과 쿠팡의 대응</b>	<b>9</b>
1. 쿠팡은 어떻게 152명의 집단감염원이 되었나?	10
1) 경과	10
2)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쿠팡	13
2. 쿠팡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	22
1) 허술한 방역실태와 느슨한 초기대응의 상호작용이 감염참사를 야기함	22
2) 쿠팡의 노동조건이 감염에 미치는 영향	32
3) 강도 높은 노동강도하에서 방역상의 문제점	43
4) 아프면 쉬기? 아파도, 다쳐도 일하기	44
5) 거대한 물류센터에서 노동자의 공간은 어떻게 사라졌는가?	48
3. 쿠팡은 왜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힘쓰지 않는가.	51
<b>III. 집단감염 이후 방역실태와 문제점</b>	<b>56</b>
1.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보여주기 식의 방역실태	57
1) 불충분한 방역조치들	57
2) 불가능한 거리두기	59
3) 작업 시 거리두기	61
4) 물류센터 특수성을 무시한 쿠팡의 방역 조치들	62
2. 안전감시단(와처)의 운영과 쿠팡의 “코로나19 수칙 준수 강화 프로그램”	65
1) 안전은 없고 감시만 남은 와처의 역할	66
2)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방역의 책임	67

3. 소결	70
<b>IV. 쿠팡 부천신선센터 노동자들의 피해와 쿠팡의 대응</b>	<b>72</b>
1. 감염병 확산 사건을 중심으로 본 노동자들의 실태	73
1)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과 경제적 문제들	73
2) 관계와 일상의 변화, 사회적 낙인들	80
3) 소결	85
2.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쿠팡의 대응	87
1) 금전적 대응	87
2) 치료·회복을 위한 지원	94
3)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일관성 없는 조치	95
4) 소결	97
3. 쿠팡풀필먼트 목천센터 조리원 사망사건에 주목하며	99
1) 쿠팡물류센터 식당조리노동자는 어떻게 사망했나	99
2) 쿠팡은 조리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해쳤나	100
3) 정부의 소극적 조치의 문제점	106
4)소결	111
<b>V. 결론 -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과제</b>	<b>114</b>
1. 마치며	115
2. 기업, 쿠팡의 책임	116
3. 국가의 책임	117
<b>보론</b>	<b>115</b>
1. 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법률적 검토	116
2. 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 19 집단감염에 대한 보건의학적 검	123

## 토 목차

I

서론

## 1.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고는 인재이자 인권의 문제

### 1) 코로나19 감염병 대확산의 위기에도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쿠팡 자본

2020년 5월 말 발생한 쿠팡발 코로나 집단감염은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노동자 84명을 포함하여 150여 명의 시민을 감염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전후로, 3월에는 고속배송의 압박에 의한 쿠팡맨(쿠팡의 배송노동자, 현재는 쿠팡친구로 변경되었다)의 과로사, 6월에는 방역 강화를 위해 더욱 독한 혼합소독제를 사용해 청소업무를 해야 했던 쿠팡물류센터 식당의 조리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진 바 있다.

봉쇄와 격리, 거리두기 등 이동 제한이 극심한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쿠팡과 같이 물류관리, 택배 배송 등을 기반으로 한 기업-일터는 사회 필수노동의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류·배송산업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계약직, 일용직을 비롯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특수고용과 같은 형태의 불안정노동자이다. 쿠팡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은 이런 불안정노동을 통한 이윤축적구조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일터의 복잡한 동선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밀접접촉자만을 분류해 돌려보낸 후 서너 시간 만에 작업장을 재가동했던 점, 불안하지만 거부보다는 연장근무까지 해야 했던 상황은 쿠팡의 노동조건과 노동자들이 처한 인권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 2) 불안정한 노동과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가 불러온 일터의 재난

쿠팡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는 쿠팡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고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3월의 구로 콜센터 노동자 집단감염에 이어 반복된 일터집단감염 사고가 구조적 문제임을, 그 안에서 노동자가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에 주목하며 쿠팡의 노동자들을 만났다.

노동자들은 쿠팡에서 일어난 집단감염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방역수칙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실적에 쫓겨 지키기도 어려웠고, 노동자들의 개선 요구는 곧 고용의 불안과 직결되었다. 결국, 감염의 위험과 결과는 온전히 노동자 개인의 몫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쿠팡은 지금까지도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법과 정부의 지침대로 했으며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쿠팡의 무책임이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 경제적 곤란을 직면하게 했고, 감염병의 낙인까지 더해져 자신들의 삶을 점점 더 온전히 지탱하기 어렵게 했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들은 쿠팡의 노동 환경·노동조건을 비롯해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는 집단 감염은 언제든 반복될 것이라 증언하고 있다.

이번 9월의 보고서 작성과 발표는 쿠팡 풀필먼트(물류센터), 쿠팡맨, 쿠팡플렉서, 쿠팡이츠(배송) 등에 이르는 쿠팡이라는 기업을 일터로 삼고 있는 쿠팡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완결될 쿠팡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중 첫 번째이다. 첫 번째 보고서에는 쿠팡 풀필먼트, 그 중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신선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좀 더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우선 진행하는 이유는 감염과 자가격리, 사회적 차별과 낙인 등으로 심신의 건강을 비롯해 온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조건이 깨지고 있는 쿠팡 피해 노동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기업과 국가, 사회의 응답이 하루라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 2.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

(1)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사회 필수노동이 된 물류배송산업의 막대한 이윤이 노동자들의 불안정노동에 기반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윤을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자본의 문제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이었으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장의 문제점과 쿠팡의 책임문제를 노동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밝히고자 한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지는 불안정노동의 현실과 일터에서의 감염이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고자 한다. 불평등한 일터의 감염으로 인한 노동자·시민의 피해와 고통이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별과 낙인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인했다. 현장을 바꾸기 위한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에 해고로 응답하는 일터의 관행이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동자의 삶을 위협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쿠팡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시기에 필요한 존엄과 평등에 기반한 인권의 원칙을 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3) 쿠팡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과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기상황에서의 노동자·시민의 피해와 권리공백 상태를 방치하는 국가의 책임을 짚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진행한다. 감염병 상황에서 일터의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의 대책 마련에 사회적인 공론화를 진행하려 한다.

(4)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큰 어려움과 불구하고 이 피해와 고통이 일터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제기한 쿠팡 노동자들이 있다. 일터에서의 평등이 곧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점에 주목하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리는데 조사의 주된 목적이 있다.

## 2) 조사팀의 구성과 조사 대상 및 방식

### (1) 쿠팡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단의 구성

(사)김용균재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노동권연구소,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쿠팡피해자모임 등 17개 인권단체 및 법률단체 및 노동조합 등과 건수, 권영국, 기선, 김우, 김한별, 김혜진, 랄라, 명숙, 박소영, 이현아, 장귀연, 장혜진, 전주희, 정동헌, 정병욱, 조미연, 조혜연, 최규진 등 18인의 인권활동가, 법률가, 연구자 노동조합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 (2) 조사경과 및 방식

7월 10일 쿠팡 부천물류센터 기초조사

7월 22일~9월 5일 심층면접조사

### (3) 조사대상

대부분은 쿠팡 부천물류센터 노동자로 구성되었고, 비교군을 위해 인천지역 물류센터 중 노동자의 감염 확진이 있었던 타센터 노동자와 타지역 물류센터 노동자 약간 명, 쿠팡이츠와 쿠팡맨(쿠팡친구)의 1인씩을 포함하여 총 24인의 노동자를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



## Ⅱ

# 코로나19 초기 발생과정과 쿠팡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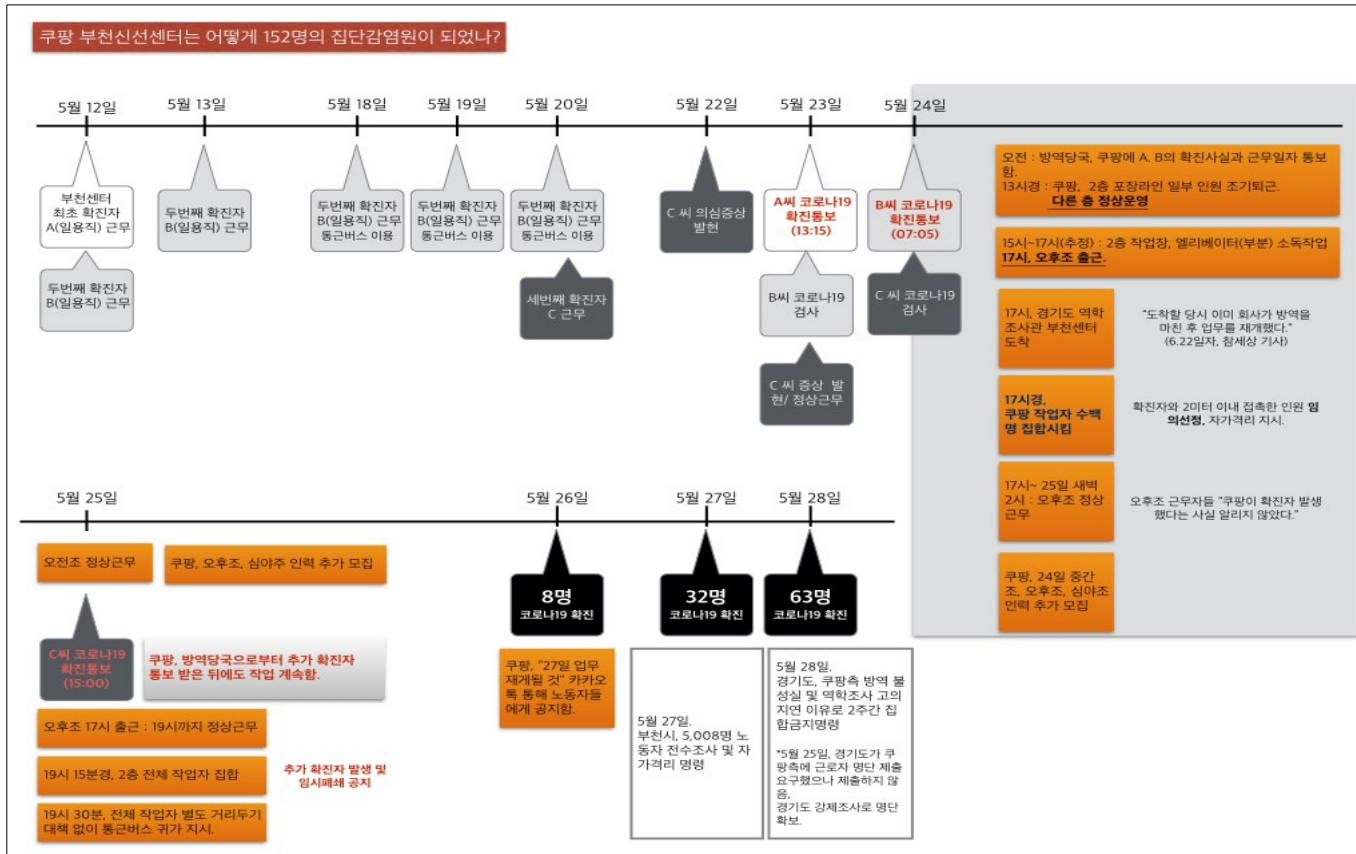
## 1. 쿠팡은 어떻게 152명의 집단감염원이 되었나?

### 1) 경과

- 5월 23일 부천물류센터 첫 확진자 발생. (5월 12일 포장라인 근무자)
- 5월 24일 정상 근무 지시. 2층 근무자들은 출근 후 집단조회에서 밀접접촉자 분류 및 격리조치. “방역 다 지켰고 안전하고 아무 이상 없으니 계속 일을 하라.”
- 2층 외 다른 층 근무자들은 별도 상황설명 없이 정상 근무.
- 5월 24일 오전조, 오후조 2시간 연장근무.
- 5월 25일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18~20일 포장라인 근무자), 오전조 2시간 연장근무.
- 5월 25일 오후 7시. 휴게실로 모이게 함. 섯다운 공지.  
(\*\*이 시각부터 5월 25일 오후 7시 근무자들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지할 때까지 무려 54시간 동안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대부분 종사자는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근무했고 이로 인해 15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졌다.)
- 5월 26일 오전 1시 36분.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문자 발송.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는 증상이 없어도 관할 군구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를 금일 중으로 반드시 받으라.’
- 5월 27일 오전 9시. 36명 확진자 발생. (인천 계양구, 부평구, 동구, 연수구, 경기 광명 등 인천 거주자 22명, 경기도 10명, 서울 4명)
- 부천시와 각 지자체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근무자, 납품업체 직원, 아르바이트생, 퇴직자 등 3,626명 대상으로 전수 검사.
- 32명 직원, 가족 4명에게 2차 전파.
- 7월 2일 부천신선센터 재가동.

쿠팡 집단감염,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 쿠팡 부천신선센터 감염자 수는 총 152명으로 쿠팡 노동자 84명, 추가전파 68명으로 집계됨.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그림 II-1> 최초 확진과 초기 대응 타임라인

## 2)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쿠팡

### (1) 인천6센터 확진 사례를 위기의 신호로 읽지 못함

5월 24일 이후 진행된 부천에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나기 전, 인천6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 감염자는 OB 출고조절에 투입된 리베치 단기 사원(일용직)으로 5월 7일 하루 근무했으며, 5월 19일 확진되었다.

이에 따라 쿠팡 인천6센터는 단기 사원과 접촉한 밀접접촉자를 선별하여 자가 격리 조치 하였으며, 이후 정상영업을 계속했다.

문제는 이 당시 이태원 클럽을 단일 감염원으로 특정할 수 없을 만큼 지역전파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산발적인 지역전파에 따라 쿠팡 작업장을 고위험 시설로 파악하고 능동적인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했지만 임의로 소수의 밀접접촉자를 선별하고 자가격리 후 정상영업을 계속하는 데 그쳤다.

인천6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5월 19일 확진된 K 씨가 7일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측의 설명이 아닌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다음날 20일 확인하고, 관리자에게 “확진자 나오는데 센터는 왜 정상 운영하냐”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인천6센터장이 직접 내려와, “우리는 안전하다. 디팩존 리베치 사원이 감염됐다. 캡틴하고 12명가량을 자가격리했다. 일본에서 운영해도 된다고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인터뷰 내용 재구성)

그런데 당시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선별기준은 무엇이었을까?

확진자는 5월 7일 단 하루 근무한 일용직이다. 쿠팡에서는 처음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작업 투입 전, 회의실 혹은 안전 교육장에 불러 모아 안전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확진자의 동선은 리베치 뿐만 아니라 교육장까지 넓혀지는 셈이다. 또한 일용직은 이들은 관리하는 단기 선임과 접촉해야 하는데,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확진자와 접촉한 단기 선임은 격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단기 선임들은 단기 사원들이 수기 서명부 체크하는 거 다 본다. 출근 서명부가 있는데, 오늘 출근 사인하고 내일 출근할 건지 여부 의사를 묻고, 이를 다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걸 받은 단기 선임은 격리 안 했다. 단기들은 줄을 서서 서명을 받는다.”

이러한 인천6센터의 대응 양상은 이후 부천신선센터로 반복된다.

인천6센터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자를 통보받은 뒤 한 조치는 12명으로 추정되는 소수의 접촉자를 분류,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임의적이면서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것이다.

“5월 7일 확진자는 오후조다. 그런데 이날 주간조는 연장근무 2시간을 했다. 그러니까 연장근무를 한 2시간은 오후조와 주간조가 겹치는 것이다.”

연장근무를 하는 2시간가량 주간조와 오후조가 함께 작업하게 되어 밀집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인천6센터의 리베치 장소에는 CCTV가 있는데, 이를 통해 쿠팡 측이 밀접접촉자를 분류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간조가 연장근무를 하면 자신의 작업대가 아니라 팩존(리베치 작업장소)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접촉자가 더 많아진다.”는 제보도 있다.

“(인천6센터)에서 확진자 터지고 방역 조치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간다. 7일 하루 근무한 사원이 19일 확진이 된 건데, 그 기간이 2주인데, 2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아. 방역 다 했어.’라고 하는데,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쿠팡은 인천6센터의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산발적인 지역전파가 작업장 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현실화한 것을 깨닫고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한다. 하지만 부천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쿠팡의 전체 방역은 사회적인 수준의 방역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운영되었다. 오히려 인천6센터의 대응은 부천신선센터보다 나은 수준이었다고 노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부천 사태에 앞서 5월 19일에 인천 6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만큼 사측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인지해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하지만 쿠팡 부천물류센터는 지난 7월 2일 영업을 재개했으나 여전히 형식적인 방역에 그치고 있어 보인다."며 "근무자들은 언제 또다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터질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경제신문, 9월 4일 자, '쿠팡 김범석 대표 "코로나19 방역 당국 횡방꾼인가?" 비판 증폭')

## (2) 24일, 3시간 소독 후 작업재개는 "충분한 방역"인가?

쿠팡이 '쿠팡 뉴스룸'이라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전하고 있는 방역과 관련된 일관된 입장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자신들은 코로나19와 관련 '충분한' 방역 조치를 수행해오고 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은 일본의 지침에 따른 충분한 방역을 해왔으므로 부천센터의 집단감염의 원인은 외부(이태원 학원강사)에 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주장을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검토할 것이다. 첫째, 쿠팡은 충분한 방역 조치를 수행해왔는가. 둘째, 일본의 지침에 따랐다고 했을 때, 일본의 지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셋째, 쿠팡의 집단감염은 외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였나.

우선, 쿠팡은 24일 첫 확진자를 파악한 이후 2층과 엘리베이터 등에 방역을 한 뒤 3시간 후에 업무를 재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첫 확진자 파악 후 현장에 출동한 부천시 보건소 방역팀에 의해 확진자가 근무했던 부천신선물류센터 2층과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잔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방역 종료 후 3시간 동안 폐쇄를 거쳐 업무를 재개하는 것으로 부천시 보건소와 협의 되었습니다. 즉 쿠팡은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토대로 방역 조치가 충분히 되어 업무 재개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5. 24. 18:00경 부천신선물류센터 2층의 업무(포장 업무)를 재개했고 이후 5. 24. 오후 조 및 5. 25. 오전조 근무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쿠팡 뉴스룸, 6월 18일 자, “부천 신선물류센터와 관련된 오해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참세상 보도에 따르면 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소독제의 잔류 기간 등을 고려해 최소 3시간을 환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운영 재개에 대해서는 쿠팡과 논의한 적 없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파견된 경기도 역학조사관 역시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방역이 끝나 있었고, 업무 재개가 된 이후였다. 역학조사관에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역할도 없다”라는 점을 들어 쿠팡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sup>1)</sup>

우선 쿠팡 측이 소독을 했다는 2층 작업실과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을 소독하는 것이 충분했는가의 문제이다. 24일은 최초 확진자 A 씨(12일 근무)와 B 씨(18, 19, 20일 근무)의 확진 사실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전달되었다. 이날 13시경 밀접접촉자를 선별하여 귀가 조치한 후 해당 작업공간과 엘리베이터 등 공간을 소독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확진자 2인은 주로 2층과 2.5층에서 작업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이미 작업장에 잔존하였다면 해당 공간을 넘어 사람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신선센터 전체 건물에 대한 임시 폐쇄와 소독을 하지 않았다.

또한 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3시간의 근거를 ‘환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쿠팡

1)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47>



측은 소독 후 3시간이라는 '시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물류센터처럼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에서 소독에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인 방역 시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쿠팡은 방역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빌미로 최소규정을 따랐을 뿐이다.

5월 28일 쿠팡 뉴스룸을 통해 “쿠팡은 방역 당국과 협의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조치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고,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것의 결과가 부천 신선센터 일부 장소의 소독, 그리고 3시간 후 업무재개였다.

### (3)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유동적인 작업 동선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단장 이희영)은 5월 27일 브리핑을 통해 쿠팡의 집단 감염에 대해 확진자의 연관성 등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추정 감염장소인 2층 구내식당 및 작업실, 1층 흡연실을 토대로 접촉자 489명을 파악하여, 407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82명을 능동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자가격리 인원이 충분했는가 여부는 쿠팡 측의 실질적인 작업 동선을 고려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방역 당국에서 조사할 당시 쿠팡 측은 방역 당국에 쿠팡의 매우 유동적인 작업방식에 대한 정보제공과 협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당시 작업자들의 인터뷰 내용의 절대다수는 당시 밀접접촉자의 선별기준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정 작업대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작업대에서만 일하지 않고 신선센터 각 작업구역에 '차출'되어 일한다. 즉 방역의 장소는 확진자가 작업한 곳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 ○ 확진자 L 씨(24일 밀접접촉자로 미분류)의 작업 동선

24일 당시 쿠팡 측은 전체 직원에게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확진자의 작업일, 작업 동선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쿠팡은 24일 밀접접촉자를 선

별해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하나, 아래 그림과 같이 27일 전수조사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대다수의 노동자는 작업공간과 공용공간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림 II-2> 확진자 L 씨의 작업동선 (5월 18일~24일간)

\*빨간 동그라미 표시가 L 씨의 대강의 작업동선 및 다녀간 공간이다.

“포장 업무를 하는데, 주로 2.5층에서 일한다. 하지만 종종 다른 공정으로 차출되어 일했는데 불규칙하다. 엘리베이터는 통근버스 타러 갈 때만 타고 2층 식당과 락커, 화장실 사용했다.”

“내가 일하는 시간에도 일하는 작업대가 4번은 바뀐다. 왜냐면 한 번에 고정된 게 아니라 저쪽에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인원 빼서 보내는 방식이라 4번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처음 입사할 땐 2층 포장 일 시작했지만, 2층 포장 일이 없을 땐 2.5층 싱글이라고 해요. 2.5층에서도 일을 하고, 또 어떤 날은 집품 팀으로 뽑혀서 6층에서도 집품을 해본 적도 있고, 하루는 4층으로 가서 집품 일을 한 적도 있고.”

“포장은 둘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품이 끝나면 그 인원을 빼서 2층 포장으로 가요. 거기서도 또 다른 층에서 인원 딸리면 또 뽑아서 보내요. 그래서 접촉면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포장은 2명이서 하게 되면 서로 등이 닿을 정도로 비좁아요.”

#### (4) 구로 콜센터와 쿠팡 부천의 차이

정은경 본부장이 참여하여 작성한 논문<sup>2)</sup>에 따르면 구로 콜센터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보고된 지 하루 만에 19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봉쇄했고, 건물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주민, 방문자까지 1,143명 전원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는 검사 대상자들과 상황 대응팀이 즉각 공유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식은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로비 등 공간에서 서로 다른 층에 있는 근무자끼리도 상당한 상호작용을 했지만, 코로나19는 11층에서 집중적으로 확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로 콜센터 감염 확산 당시 정은경 본부장은 4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콜센터 한 층(11층)에서 노출된 경우 양성률이 43.5%로 굉장히 높았다... 이는 밀집, 밀폐된 근무 환경이 코로나 전파에 위험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는 일본의 신속한 대응에 따른 K-방역의 성공사례라기보다는 “콜센터와 같은 고밀도 작업환경이 코로나19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로서 소개한 것이며, 이에 대한 위험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sup>3)</sup>

2) 논문 제목은 “Coronavirus Disease Outbreak in Call Center, South Korea”이며, 다음의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https://wwwnc.cdc.gov/eid/article/26/8/20-1274\\_article](https://wwwnc.cdc.gov/eid/article/26/8/20-1274_article)

3) The magnitude of the outbreak illustrates how a high-density work environment can become a high-risk site for the spread of COVID-19 and potentially a source of further transmission. Nearly all the case-patients were on one side of the building on 11th floor. ....Despite considerable interaction between workers on different floors of building X in the elevators and lobby, spread of COVID-19 was limited almost exclusively to the 11th floor, which

구로 콜센터와 부천 쿠팡에서 방역에 대한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코로나19 감염이 보고된 지 하루 만에 19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봉쇄했느냐, 7층짜리 물류센터 중 2층과 일부 시설의 3시간 소독이냐의 차이가 결정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 쿠팡 측이 반박하는 바대로 방역 당국의 지침 여부로 환원할 수 있을까?

구로 콜센터는 3월이었고, 전후해서 대규모 작업장에서 단 한 명만 확진자가 나와도 전체 건물을 임시 폐쇄하는 것은 일본의 지침을 넘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방역 조치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식적 수준'의 대처로 인식되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방역 기조는 '과도한 대응'이었으며, 부천 쿠팡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더욱 강력하고 과도한 대응 기조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의 논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구로 콜센터와 부천 쿠팡이 고밀도 작업장의 위험성을 공유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콜센터는 7~9층과 11층에 있다.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층 사이를 이동하지 않으며 식사를 위한 사내 식당이 없습니다.”

<Coronavirus Disease Outbreak in Call Center, South Korea>

구로콜센터는 부천 쿠팡과 마찬가지로 고밀도 위험장소이지만, 노동자들이 층과 층 사이를 이동하지 않고 자신의 작업대에서 고정적으로 일한다는 점이다. 물론 교대근무에 따라 오전조와 오후조가 같은 작업대를 공유하지만, 층 사이를 이동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사내 식당이 없어 건물 전체 인원들 간의 활발한 접촉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11층에서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상당한 상호작용(considerable interaction)” 즉 ‘접촉’의 공간적 의미이다. 감염상황에서 공간은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공간의 범주가 달리 의미화된다. 마스크를 강조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상호

---

indicates that the duration of interaction (or contact) was likely the main facilitator for further spreading of SARS-CoV-2.

작용을 최대한 분리하려는 노력이며 이에 따라 밀집도의 강도는 달리 파악되는 것처럼, 작업자의 작업방식과 작업환경, 작업 동선에 따라 감염 가능성의 공간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구로콜센터의 환기 시설도 매우 열악했지만, 물류센터의 밀폐구조에서의 환기와 비교될 수 없다. 강도 높은 전신노동을 수행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마스크는 1시간이 채 안 되어 땀에 젖어 있었으며, 영하 18도의 저온 냉동고에서 작업해야 하는 작업환경의 특성상 노동자들은 항시적인 미열 상태를 경험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건강 이상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결정적으로 수시로 '차출'당하는 작업 동선상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구로콜센터와는 달리 '상당한 상호작용'의 위험은 고밀도 작업장의 위험과 겹쳐져 집단 감염의 위험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질본이 이러한 작업동선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작업자의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작업 동선은 그날그날의 매시간별 작업량에 따라 구역 관리자(캡틴)가 자율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한 명이 작업하던 것도 작업량이 제때 소화되지 않으면 3~4명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해왔다. 이때 해당 작업에 '차출'된 노동자의 작업내용은 PDA 단말기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러한 작업상의 특징은 결정적이다. 즉 쿠팡은 24일 확진 사실과 작업자의 동선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 직원에게 알리고, 해당 작업 동선과 겹치는 작업 동선에 대해 현장 노동자의 자발적인 제보를 접수했어야 했다.

## 2. 쿠팡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

### 1) 허술한 방역 실태와 느슨한 초기대응의 상호작용이 감염 참사를 야기함

#### (1) 방역실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 쿠팡의 방역은 충분하였을까? 쿠팡 측이 반박하는 대로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넘어 그 이상의 가장 강력한 조치”를 수행하였을까? 그런데도 이태원 학원강사발 감염이라는 우연한 불운을 직격으로 맞이한 것일까?

다음은 쿠팡 뉴스룸을 통한 쿠팡의 방역 조치들과 이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이 경험한 방역 실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 ① 열감지기로 감염증상이 있는 직원의 출입을 걸러냈다?

쿠팡은 우선 부천 물류센터를 포함한 전국 모든 물류센터에 열감지기를 설치해 감염 증상이 있는 직원의 출입을 걸러냈다.

(쿠팡 뉴스룸 5월 26일 자. 쿠팡, ‘고객 안전’ 위해 물류센터 폐쇄 - 직원 전수조사 포함 초강력 방역 조치)

“코로나 이후 입구에서 열 체크한다. 그런데 거리두기 안 하고 사람들이 다닥다닥 줄 서 있다. 우리는 열 체크가 별 소용이 없다. 냉동하고 상온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내가 열이 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건지, 냉동실을 왔다 갔다해서 열이 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 ② 마스크와 장갑

물류센터 안에서는 모든 직원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해왔다....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물류센터에서 매일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직원이 쓸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쿠팡 뉴스룸 5월 26일 자. 쿠팡, '고객 안전' 위해 물류센터 폐쇄 - 직원 전수조사 포함 초강력 방역 조치)

쿠팡은 코로나19 전 시기에 걸쳐 전 직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침 준수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쿠팡의 코로나19 조치와 관련된 오해에 대한 설명(쿠팡 뉴스룸, 7월 3일 자))

“쿠팡이 대처한 것은 출근할 때 입구에서 열 검사하고 손 씻는 거(세정제) 준 거 외에는 없다. 마스크 없으면 일 못 한다고 했지, 주는 건 없었다.”

“직원들은 고정된 곳에서 일하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지만, 관리자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계속 라인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죠. 관리자들이 다수의 직원과 접촉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매개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일한 컴퓨터에는 마우스가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 장갑을 벗고 입력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감염된 것은 아닐까... 마우스만 있었어도 장갑을 벗지 않았을 텐데.”

### ③ 식당 등 공용공간

쿠팡은 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감염 발생 이전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식당 등 공용 공간과 작업장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왔습니다.

식당의 경우, 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감염 발생 당시 적용되던 5월6일 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서는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침에서는 격벽 설치의 마주 앉아 식사할 경우의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비말 전파 가능성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급적 일렬로 앉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발생 이전부터 일렬로 앉기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점심시간을 2배로 늘려 인원을 2개 조로 나누어 식당의 혼잡도를 절반 이하로 크게 낮추었습니다.

(쿠팡의 코로나19 조치와 관련된 오해에 대한 설명(쿠팡 뉴스룸, 7월 3일 자))

“(작업장이나 식당에서 거리두기는?) 안 했다.”

“식당에서는 뺄뺄하게 줄을 선다. 나와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 전혀 없다. 24일 하루만 식당에서 한 칸 간격을 두고 지그재그로 먹은 것이 다다.”

“(식당에서) 거리두기가 전혀 안 됐다. 밥 먹으러 내려갈 때 모든 사람이 쭉 서 있는데 거리두기 안 된다. 밥 먹는 1시간에 쉬는 시간까지 포함되는데 빨리 먹고 쉬어야 하니까.”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릴 때가 있을 텐데.) 다 몰린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밥 먹을 때 몰리고, 또 직원들 모아놓고 일감 배분할 때도 몰리고.”



#### ④ 작업대 등 소독

쿠팡은 사업장 내 인원 밀집 우려가 있는 공용공간 등에 대하여 매일 전문업체를 통하여 소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작업자의 안전 및 식품을 다루는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대 키보드 등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소독용 티슈 등을 지급하여 매 작업 시작 전마다 자가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계산대 등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작업자가 작업 시작 전에 소독용 티슈 등을 이용하여 자가 소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쿠팡의 코로나19 조치와 관련된 오해에 대한 설명(쿠팡 뉴스룸, 7월 3일 자)

“노트북 화면이 진짜 먼지가 하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제 사원 입력을 해야만 제가 일을 하는 중에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손 소독제 정도는 갖춰주고 일을 시켰으면 이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죠.”

“(셔틀버스에서 거리두기나 발열 측정은?) 없다. 집단감염 사태 이후 한다고 하더라.”

“(현장의 환기는?) 오히려 문을 닫는다. 냉기 나갈까 봐. 오히려 화장실 다닐 때도 문 닫고 다니라고 한다.”

“(회사의 방역 조치가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엘리베이터나 스캐너 등에 항균지만 붙어있어도 N차 전파가 줄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무하면서 소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소독 장소는 어디인가요?) 4층 복도 스팀 청소하는 거 한 번 목격했어요.”

#### ⑤ 방역실태 종합

현장 노동자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들은 쿠팡에서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입구에서 속 소독제도 마음껏 사용할 수 없었다. 관리자가 소량씩 손바닥에 덜어주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지

지 않았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줄은 거리두기 없이 밀착되어 있었고, 버스 탑승도 거리두기를 위한 인원 제한을 하지 않았다.

셔틀버스를 타고 물류센터 입구에 도착하면 손에 짜주는 소독제를 받느라 또 다닥 다닥 줄 서 있어야 했다. 센터 안에 도착하면 화장실은 부족해서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주로 조회를 하는 안전 교육장에서도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공용 띠커룸에서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이곳 역시 마찬가지였다.

식당은 2개 조로 운영이 되었지만, 전체 노동시간에서 단 1분의 휴게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작업방식 때문에 식사 시간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일렬로 식사하거나 지그재그로 앉아서 식사하는 방법, 그리고 칸막이를 설치했다는 쿠팡 측의 주장은 모두 집단감염 사태 이후 개선된 내용이다.

그전에는 식사 시간을 2개 조로 운영되었을 뿐, 현장에서 거리두기 지침을 위한 관리자가 배치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여유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식당 앞에는 늘 복적대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을 뿐이었다.

2층 컴퓨터 작업대는 먼지가 쌓여있을 정도로 불결한 환경이었다. 쿠팡 측은 매일 전문적인 소독을 해왔다고 하지만, 인터뷰를 한 노동자 누구도 작업장에 전문 소독한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컴퓨터, 늘 먼지구름이 굴러다니고 테이프나 박스 조각이 텅굴어 다니는 작업장 바닥들을 이야기하며 소독은커녕 청소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2층 작업대에는 소독 티슈나 소독젤 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소독젤은 오직 현관 앞에서 출근길에 조금씩 짜주는 것이 전부였다고 말한다.

**(3) 쿠팡 노동자들은 왜 쿠팡의 '충분한 조치'를 불신하는가.**

쿠팡 노동자들은 쿠팡의 방역이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쿠팡 측은 충분한 방역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간극과 불신은 집단감염 사태 이후 쿠팡 측의 적절한 설명과 사과가 부재한 상태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쿠팡 측은 뉴스룸을 통해 ‘오해’에 대한 반박 보도를 내고 있을 뿐이다. 쿠팡 노동자들이 오해한 것이 있다면 쿠팡은 지금이라도 피해자 모임에 직접적인 설명과 함께 납득할만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쿠팡은 쿠팡에서 일하다 감염된 노동자들에게 지금껏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 ① 확진 사실 은폐, 축소가 야기한 최악의 판단

쿠팡 노동자들이 초기 대응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쿠팡 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모색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나아가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이를 전체 카톡방에 있는 동료에게 알리는 행위조차 강제로 막아버렸다.

“한 조(심야, 주간, 야간 포함)가 한 200명인데, 카톡방이 있다. 5월 25일 저녁에 카톡에 C가 확진된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관리자가 C에게 전화해 ‘카톡방에 확진사실 쓴 내용을 내려라.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고 하더군요. 안 내리니까 결국은 관리자가 삭제했더라고요.”

아래 인터뷰는 모두 24일 조회에서 관리자들의 “괜찮다”라는 말만 듣고 작업하다 추가로 확진된 사례이다. 모두 24일 셋다운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정보의 공개와 소통의 부재가 가져온 알권리의 부재가 어떻게 자신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회마저 박탈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만약 최초 확진자 발생과 동선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했더라면, 아마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의 안전을 위해 더욱 능동적인 선택과 행위를 했을 것이다. 쿠팡의 지침을 믿고 작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마스크를 더 철저히 썼을 수도 있다. 공용공간 등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을 수도 있고, 당장의 작업을 거부했을 수도 있다.

물론, 이미 감염이 된 상태에서 무증상인 채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를 막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시점에 쿠팡은 '책임과 판단'의 문제를 가장 최악으로 몰고 갔다는 점이다. 잠재된, 하지만 임박한 위험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판단을 했고, 가장 독단적으로 판단했다. 판단에 따른 책임은 부재했다.

“저는 그날 나온 확진자가 20날 일을 했는데 저하고 밀접 접촉을 했대요. 그날 24일 날 제가 출근을 했는데, 만일 거기서 섯다운을 했으면, 혹시 저로 인해서 전염된, 옮겨진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괴로웠거든요.”

“그 관리자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들어가서 일해도 되나요? 물어봤더니, 걱정 말래요. 걱정 안 하셔도 된대요. 이름 부르시는 분 해당이 안 되면 그냥 들어가서 일해도 되고, 마스크만 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일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 듣고. 그래서 들어가서 일한 거예요.”

“방역 조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회사 말로는 했다고 하면서 우리들 안심시키고. 그리고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섯다운을 안 하고 25일까지 근무를 시켰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상황에서 부천보건소, 질본이 시키는 대로 방역을 철저히 했다고 말하는데 본 사람이 어디 있나. 24시간 풀로 직원들을 돌리는데 언제 소독하고 방역하나. 거짓으로만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

## ② 소독 후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럼에도 충분한 소독을 했다?

5월 29일 오후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이희영 공동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쿠팡 부천신선센터의 방역작업에 대해 밝혔다. 이희영 단장은 브리핑에서 “27일 오후 3시부터 실시한 작업장, 휴게실, 남녀라커룸 등 전 구역에 대한 환경조사에서 총 67건의 환경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공용 안전모와 2층 포장(Packing) 작업장 내 작업용 PC에서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왔다”라며 “확진자 발생 이후 시행한 회사의 소독 조치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간이 넓고 물건이 많아 소독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찌꺼기까지 닦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며 “죽은 바이러스일 가능성도 있어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고 해서 전파 위험성이 높다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소독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7월 3일 '쿠팡의 코로나19 조치와 관련된 오해에 대한 설명 (쿠팡 뉴스룸)'에서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초기 방역 당국 환경 검체 검사 결과 일부 키보드 등 사무용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해당 바이러스가 부천신선물류센터 내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라며 "물류센터 키보드 등 사무용품을 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하여 왔습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 다수의 증언과 방역 당국이 모두 쿠팡의 '불철저한 소독'을 문제 삼고 있는 와중에도 쿠팡은 여전히 충분한 방역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이 집단감염으로 확산하는 시기는 지역감염이 퍼지고 있는 와중이었다. 단일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중층적이고 산발적인 원인이 교차하여 감염의 가능성이 증폭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쿠팡의 집단감염은 현실화하였다. 그렇다면 단일하고 직접적인 원인을 밝힐 수 없으므로 쿠팡의 방역이 충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제2, 제3의 감염사태를 막기 위해 검출된 바이러스가 비록 소량이더라도 검출되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한 위험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했을 터이다.

### ③ 확진자 발생 후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관리자

쿠팡에서 집단감염 이전에 마스크 착용 실태는 엉망이었다. 현장 노동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리자(캡틴)들조차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넘쳐나는 물량을 제시간에 소화해야 한다는 목적 때문에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녔다고 한다. 이 지점에서 쿠팡 측의 "철저한 방역"이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 현장과 유리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쿠팡 임원들은 자신들의 작업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방역지침을 조용히 고지했을 뿐 물량 소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장을 묵인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두 경우 중 어느 쪽이라도

“충분한 방역”과는 거리가 멀다.

“관리자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계속 라인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름. 다수의 직원과 접촉이 되었을 것. 그 사람들이 매개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히려 먼지나 이런 걸 만져야 해서 장갑이랑 마스크를 쓴다. 관리자들이 계속 라인을 다니면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른다. 물량을 시간 안에 맞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경질이 된다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마스크를 안 쓴다. 그 사람들이 매개가 되었을 수도 있다. 관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직원들과 전부 다 접촉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안 쓴다.”



<그림 II-3> 집단 확진 이후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는 관리자.

#### ④ 쿠팡 노동자들의 개별적 방역 노력

쿠팡 측의 허술한 방역 조치는 역으로 쿠팡 노동자들의 방역에 대한 개별적 노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확산하는 와중, 이태원발 감염이 지역전파로 확산하는 와중에 쿠팡의 방역은 부재하다시피 했고, 집안에 아이들이나 가족이 있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감염의 경로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도 확진이 되었다.

“나의 경우 마스크, 장갑을 꼭 껴고, 회사에서 구내식당, 셔틀버스, 라커룸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나는 일절 이용하지 않았다. 그게 나만의 개인 방역이었다. 철저히 했고,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었다. 일하는 내내 식당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냥 아예 안 먹었다.”

“난 엘리베이터도 한 번도 안 타고 계속 걸어 다녔다. 거기가 옥상으로 걸어 올라가서 버스 타는 게 힘들다. 층고가 높다. 일반 건물의 2배 높이라. 7층이면 14층을 올라가는 거다. 세빠지게 지치게 일하고 거기 걸어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감염될까 두려워서 엘리베이터 못 타겠더라.”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 소독제를 챙겨 다녔다. 개인 마스크도 챙기고 여분도 챙겼다. 마스크가 계속 젖으니까 필터를 별도로 구매해서 2장씩 겹쳐서 끼워 썼다. 그래도 확진되었다. 너무 억울하다.”

“근무 중에 입어야 하는 겨울 패딩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녔다. 안전화도 개인 돈으로 샀다. 너무 불결하고 냄새나는데, 감염도 걱정되어서 가지고 다녔다.”

## 2) 쿠팡의 노동조건이 감염에 미치는 영향

### (1) 여유시간 제로의 살인적 노동강도 : UPH up의 악순환

#### ① 개별, 시간대별 작업량 통제를 통한 경쟁

쿠팡 물류센터에서 수행하는 노동과정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납품업체로부터 전국의 각 쿠팡 물류센터에 상품이 들어오면(입고, IB) 소비자가 구매하기로 한 물품을 선별하여(집품, Picking), 주문 물품을 포장하고 송장을 붙인 뒤(포장, Packing) 배송 기사들에게 물건을 넘겨주는(HUB) 작업이 한 사이클을 이룬다.



## 1. 직접 인력 및 업무 내용

- Picking(집품) : PDA를 소지하고 다니며 주문 건들을 토트박스에 담아서 포장 층으로 내려보내는 작업.
- Packing(포장) : 주문 물품을 포장하는 작업. PC를 사용하여 출고 검증을 하고 박스에 담은 뒤 송장까지 붙임. 단일품목을 포장하는 싱글 라인과 다수품목을 포장하는 멀티 라인으로 나뉘어(멀티는 리빈 작업대가 붙어있음).
- 리빈 : 멀티라인 포장을 보조하는 작업, 레일로 내려오는 토트박스를 받아서 리빈 작업대를 통해서 멀티라인 포장에 물품을 공급해줌.
- 리베치 : 레일에 내려오는 토트박스들을 싱글 라인에 배치해줌.
- 워터 : 각 포장라인별로 부자재(포장 박스, 드라이아이스, 아이스팩 등)를 가져다주는 작업.
- Hub(허브) : 포장된 박스들을 지역별로 팔레트에 적재하고 래핑을 한 뒤 자기를 사용하여 차에 상차하는 작업.

## 2. 간접인력 및 업무 내용

- PS : 캡틴을 보조하는 성격의 업무수행. 계약직이나 일용직 중에 선발(식사 집합, UPH 낮은 인원 관리, 각종 문제해결 등).
- 자키 : 전동, 수동 자기를 이용하여 팔레트, 토트박스, 부자재 등을 이동하는 지원적 성격의 업무수행.
- 오버토틈(과적) : 토트박스 위로 제품이 노출되면 레일에 걸리기 때문에(레일이 경고음이 울리며 자동으로 멈춤) 해당 토트박스를 화물 엘리베이터나 마감 시간이 촉박할 경우 인편으로 포장라인으로 전달하는 업무수행.
- 배치커버 : Picker(집품사원)들이 가져오는 토트박스에 담긴 제품들이 알맞게 담겼는지 확인하고 레일에 올리는 업무수행.
- 레일확인 인원 : 2층 사이드 쪽 레일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박스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며 과적이나 문제 있어 보이는 박스들을 수거하는 업무수행.
- 토트박스관리 인원 : 토트박스를 지속해서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빈 토트박스를 수거, 팔레트에 적재 후 래핑을 쳐서 자동화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각층에 공급해주는 업무수행.

일견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작업은 거대한 물류센터라는 공간에서 대다수의 일용직과 계약직이 작업한다는 점, 이들의 작업 동선과 작업량을 전자 시스템으로 통제하

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노동집약적인 작업으로 변화한다.

피킹을 수행하는 작업의 경우, 개별 PDA를 통해 어떤 상품을 골라내어 박스에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작업지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개별 UPH(Unit Per Hour/시간 당 생산량)에 대한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이 UPH에 대한 기준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수행되면서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을 매시간 체크하고 하위 성과자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작업속도는 어떤가요?) UPH, 그러니까 시간당 작업속도가 PDA와 연동되어 있어서 시간 대비 몇 개 했는지 알 수 있어요. 30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 골라내서 혼내요. 상위 10%는 개별로 불러서 쉬게 해주기도 해요. 이상한 경쟁을 시키는 거죠. 일용직은 UPH 떨어지는 사람들 재고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고 그 결과 일이 점점 더 빨라져요. 7시 반에 출고 마감을 해야 하는데,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6시 20분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일이 일찍 끝났으면 쉬어도 되는데 캡틴이 절대 쉬지 못 하게 해요. 오히려 9시 마감할 일을 당겨서 하게 하죠. 그런 식으로 당기면 그걸 실적이라고 하죠. 그게 관리자들과 인사사고과로 이어진다고 하니 관리자들과 우리들은 한시도 쉬지 않게 닦달하는 거죠.”

쿠팡의 UPH는 개별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측정, 통제하고 있다.<sup>4)</sup>가 낮을 경우 방송을 통해 “\*\*\* 사원님, 빠르게 중앙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식의 방송으로 해당 노동자에게 “당신은 00시부터 00시 사이에 UPH가 낮은 하위 5명에 포함되어 있다.”, “3번 이상 불러오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식의 주의 경고를 듣게 된다.

아래 <그림>의 경우처럼 자신의 순위가 전체적으로 공지되기도 하며, “지속적 저조자는 개별면담 예정”이라는 공지도 덧붙여 있다.

---

4) 모든 물류센터가 시간대별 UPH를 측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노동자들에게 알리며 주의를 주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인권실태조사팀이 수행한 5곳의 물류센터와 기타 물류센터 경험을 가진 노동자들의 제보를 통해 실시간 UPH 통제가 많은 곳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에서 생산성에 대한 관리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쿠팡의 UPH 관리는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다.

우선, UPH는 목표 생산량에 따라 투입 인원과 1인당의 생산량을 산출하여 적절한 노동강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이를 노동자 내부의 상호경쟁을 위한 장치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인터뷰에 응한 노동자, 인권실태조사팀에 제보한 노동자들에 따르면 쿠팡의 UPH는 생산량 관리가 아니라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야기해 상위 순위자와 하위 순위자를 분류하고, 이를 통해 개별 노동자들의 매시간별 생산 속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방송을 통한 개별 호출, 하위순위자라는 주의, 저성과자 퇴출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주시킴으로써 노동자가 물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의 매우 기본적인 생리 활동을 자발적으로 통제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작업하기보다는 하위 몇 퍼센트로 떨어져 방송으로 호출되거나 불려가는 “수치”나 “모욕감”을 더 견디기 힘들어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목표 UPH보다는 순위에 더 연연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저성과자일 경우 쿠팡 측에서 마련한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실관계확인서가 누적될 경우 ‘자동 퇴출’당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평균 이상의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평균 UPH는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UPH up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쿠팡의 기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3월 초에는 100만 유지해도 아무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100은 기본이고 더 하라고 해요. 목표치가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5월)은 예전과 같은 속도로 하면 빨리 걸으라고 재촉하죠.”

Emply	Unit Qty	M	평균 UPH	Process Path	Tyl
	2344	7.4	316.4	CAMP_AUTOBAG	
	2272	7.9	286.1	CAMP_AUTOBAG	
	2416	8.7	279.0	CAMP_AUTOBAG	
58	2585	10.0	257.6	CAMP_AUTOBAG	
57	2194	8.7	252.6	CAMP_AUTOBAG	
64*	2292	9.2	249.1	CAMP_AUTOBAG	
82**	1947	9.1	214.0	CAMP_AUTOBAG	
81**	1958	9.3	211.3	CAMP_AUTOBAG	
23**	1747	9.1	191.6	CAMP_AUTOBAG	
88**	1483	8.5	175.0	CAMP_AUTOBAG	
50**	109	0.6	169.2	MULTI	
39**	715	5.3	134.8	CAMP_AUTOBAG	
39**	58	0.6	98.8	CAMP	
39**	209	2.8	75.0	SINGULATION	
95*	445	8.8	50.3	SINGULATION	
81**	2	0.1	17.6	SINGULATION	

#09월07일 UPH 공유 드립니다.

#목표 UPH  
 CAMP\_AUTO 280  
 GROUP REBIN 300  
 Camp 140  
 Multi 140  
 Singulation 140  
 목표 UPH에 도달할수 있도록 분발 부탁드립니다. 지속적 저조자는 개별면담 예정입니다.

Rebin과 Pack UPH 는 시스템상 휴게시간이 포함 된 UPH로 공유 되는 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림 II-4> UPH 관련 개별 문자송신 내용

“거기서는 잠시도 쉬는 꼴을 못 봐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사원님들 박스라도 치우세요, 비품 정리하세요.”

“절대 못 앉아요. 앉아있을 곳도 없어요. 애네 입장에서는 8시간 동안 계속 (쉬지

말고) 일하라는 거다. 가만있으면 '지랄'한다. 딴 거 뭐라도 해야 한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에게 '쿠팡은 코딱지라도 파고 있어야지, 가만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쉬는 거 없다. 단 1분 1초라도 쉬면 PC에 작업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관리자가 뛰어온다. '여기 놀러 왔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준다. 할 게 없으면 부자재라도 가서 채우라고 한다. 1분 1초도 쉴 수 없고 앉을 수도 없다.”

“부자재를 채워주지도 않고 이거 대신 다른 부자재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부자재를 채워주고 노동자를 조금 위해주고 스트레칭 할 시간도 주고 하면 좋은데 부자재 채우는 건 소홀히 하면서 노동자들한테는 푸쉬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저는 최대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사람들을 채찍질한다고 그제 무한대로 올라가는 게 아닌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불합리한 거러던가 그런 거에 대해 항의를 하려고 하면 '사원님 UPH가 떨어지세요' 그런다니까.”

## ② 두 번 거르기 : 고용계약으로 거르기, 업무 성과로 걸러내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계약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부천 신선센터 외에도 불안정한 노동을 오가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과거 거쳐 간 직종들을 살펴보면, 쿠팡 플렉스, 쿠팡맨(쿠친), 타지역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과 계약직, 전기 매트 AS 수리기사, 생수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콜센터 전화 상담원, 배달원, 간호 조무사, 여행사 계약직 사원 등으로 일용직과 계약직을 오가며 저임금의 노동을 이동하고 있다.

또한 쿠팡의 물류센터들을 이동하며 일용직과 계약직으로 3~4년간 N차 계약을 지속해오고 있는 노동자들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고용에 대한 압박은 더 가중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은 대규모 일용직, 계약직들을 상시적인 계약해지와 재계약을

통해 저성과자들이나 쿠팡의 노동조건이나 처우 등에 불만을 제기하는 자들을 걸러내고, 또 업무 성과 등을 통해 내부를 통제하고 걸러내고 있었다.

우선, 쿠팡 일용직의 경우 다음 날 출근 의사를 매일매일 쿠팡 측에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매일의 입사 지원인 셈이다. 입사 지원은 세 번 이뤄진다. 아침에 출근해서 단기 선임에게 다음날의 출근 신청을 하고, '쿠팡치'라는 자체 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담당 HR에게 문자로도 출근 신청을 보내야 한다.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를 원한다고 해도 물량 대비 지원 인원수가 많으면 사측으로부터 연락을 못 받을 수 있으며, 근태가 좋더라도 성과가 좋지 못하면 연락을 못 받을 수 있다. 근태나 성과가 좋더라도 단체톡방(카카오톡)에 문제 제기나 불만을 표시하면 이 역시 연락을 못 받을 수 있다.

“(왜 정규직이 되려고 하나?) 매일 출근 확정 문자가 계속 온다. 단기(일용직)는 매일매일 온다. 매일 아침 출근 신청을 해야 하고, 쿠팡치로도 신청하고, HR에게 문자로 보내야 한다. 세 번을 매일 보낸다. 일용직은 자신이 원한다고 해도 물량 대비 인원수에 따라서, 연락이 안 오기도 한다. 성수기(명절, 연말, 장마철)에는 물량이 터진다. UPH 좋고 잘하는 사원들의 리스트가 있다. 그걸로 거른다. 물량도 물량이지만.”

“단기선임이 그러더라. 우선순위로 연락할 리스트가 있다.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까일 확률이 있다.”

일용직은 매일 매일의 입사 지원을 하는 셈이고, 매일 매일의 업무 평가를 통해 다음날 재계약의 여부를 통보받는다. 자신이 희망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자신이 희망하는 날짜에도 일할 수 없다는 매일의 불안정으로 현실화한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N차 계약을 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매일의 계약이 너무 불안정하여 3개월 계약직이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일용직이 계약직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일용직보다 UPH 압박이 더 심해서라고 답변하기도 하고, 투잡을 뛰는 경우나 주말 휴무를 원하는 경우 등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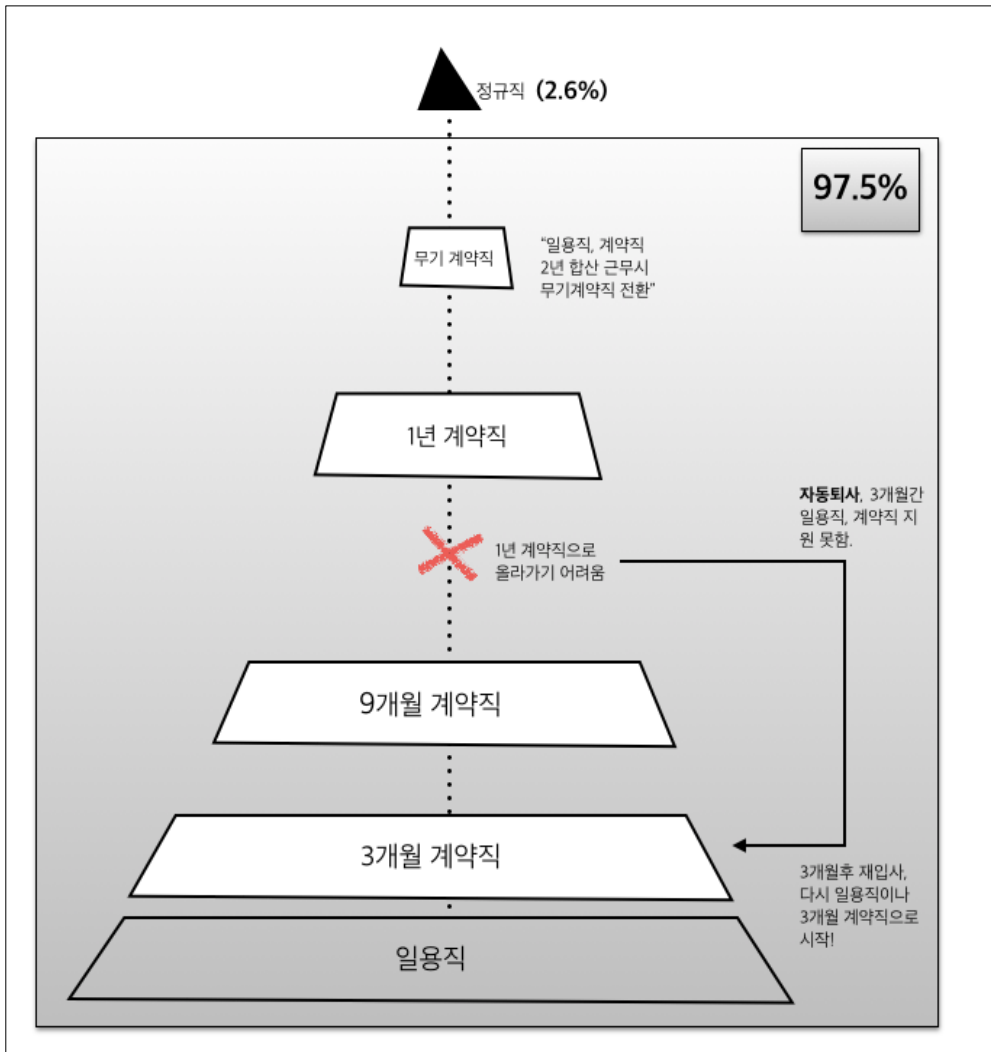
유로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도 한다. 중요하게는 계약직 전환이후 재계약이 안되면 3개월간 강제로 쉬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쿠팡은 일용직과 계약직 기간을 합쳐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약속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중에서 별도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다.<sup>5)</sup> 일용직 이후 3개월 계약직을 지원할 수 있고, 3개월 이후 9개월 계약직을 지원할 수 있다. 그 후 1년 계약직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처럼 쿠팡은 대부분의 계약직과 일용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이들을 통해 물류센터 경영이 가능한 이유는 노동자들의 작업내용이 단순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 내부를 분할하고 위계를 강화해 마치 승진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듯이 불안정 노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성과에 기반을 둔 고용장치(재계약장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

5)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의 경우도 역시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내부 성과에 따라 선별되어 전환된다.



<그림 II -5> 부천물류센터 97% 비정규직의 비밀 : 단절된 사다리 효과

어느 기업이든 내부의 성과와 승진 체계가 존재한다. 정규직 노동의 경우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전제로 성과에 따른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승진과 연결한다. 반면 쿠팡 비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 내부를 일용직, 3개월 계약직, 9개월 계약직, 1년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분할하고, 이를 마치 '승진'처럼 내부 성과체계를 마련했다. 일용직의 경우 매일 매일의 재계약은 근태, UPH 성과 등을 통해 관리하고, 이를 통해 3개월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다.



정규직의 승진 사다리와 쿠팡의 재계약 사다리의 큰 차이점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현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통상 일용직-3개월 계약직-9개월 계약직까지는 어느 정도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1년 계약직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년 계약직은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의 재계약에서 많은 노동자가 계약 해지를 당한다. 1년 계약이 안 되면 해당 노동자는 계약해지가 되며, 향후 3개월 동안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금지된다.

‘2년 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의 약속은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더 긴 기간의 계약기간 연장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며, 만약 그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할 경우, 3개월 휴직 상태로 있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일용직이나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다시 2년간의 계약연장의 수순을 다시 밟아야 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속적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는 이러한 비정규직 내부의 ‘단절된 사다리 효과’이다. 바로 위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은 자동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계약’이라는 도약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듯 쿠팡은 물류센터 비정규직 내부를 분할하고 위계화하여 고용 장치와 성과 장치를 결합한 내부 경쟁과 통제 체제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반복되는 계약해지의 불안과 재계약의 희망을 강화하면서 노동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구분	정규직	계약직	퇴사자	일용직	외주	총인원
	98	936	48	2588	120	3,790

<표 II-1> 쿠팡 부천물류센터 고용형태별 인원(명)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자료 재구성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서'는 위력을 발휘한다. 사실관계 확인서는 쿠팡의 각종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상의 실수가 발생할 경우, 저성과자일 경우, 심지어 일하다 다치는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작성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누적되면 재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관계 확인서 관련 인터뷰 내용>

“\*\*물류센터의 경우 사실관계 3장이면 경고장 1개가 되고, 경고장 3장이면 자동퇴사 처리된다.”

(안전교육은) ‘며칠 전에 00사고 났으니까 주의해라.’ 그런 식으로 조회에서 캡틴이 얘기하고 끝이다. 사고 나면 사실관계확인서를 써야 한다. 알아서 조심하라는 의미다. 일종의 시말서 같은 것이다.

“PA라고 포장 검수 업무를 하는데 팩포장하는 것을 냉매제가 잘 들어갔는지.. 유통기한을 잘못 입력했다거나 냉매제가 잘 못 들어간 것들 보고 안 하면 사실관계확인서를 쓸 수 있다. 유통기한 잘 못 기재 등 실수가 나오는데, 이걸 작업을 너무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 그걸 실수로 잡아서 사실확인서를 쓰게 한다.”

“핸드폰은 규정상 갖고 들어갈 수 없다. 걸리면 사실관계확인서 작성해야 한다. 누적되면 재계약에 불이익 된다.”

“일하다 잠깐 빠졌었는데 조퇴하는 거다. 쉬고 병원 가고 할 거라고. 그랬더니 괄호 치고 그 내용이 빠졌으니 평소에는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고 쓰라고 하더라. 그렇게 쓰고 나왔다. 사람들이 그 사실관계확인서가 내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엄청 예민하다. 왜냐면 사실관계확인서를 3번을 쓰면 그게 나중에 재계약할 때 문제가 있다고.”

“계약기간이 길지 않다. 3개월 계약직이 되면 3개월간의 업무평가를 내리고 이에 따라 6개월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근태가 좋은데 일이 느리면 해고한다. 회사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해고한다. 무단결근을 1일만 있어도 다음번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

### 3) 강도 높은 노동강도 하에서 방역 상의 문제점.

#### (1) 마스크 착용만으로 방역에 한계가 있는 노동조건

쿠팡 측은 아프면 출근하지 말 것,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마스크 착용 또한 강도 높은 노동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마스크 필터는 땀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는 감염 차단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즉 밀폐된 작업장에서 노동자들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개별이 아무리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쿠팡 측이 주장하는 대로 충분한 소독이 매일매일 이뤄졌다고 해도 방역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저는 마스크를 식사 때나 물 마실 때 외에는 마스크를 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현장의 작업 환경상 냉장실 때문에 온도가 낮는데, 조금만 일을 하다 보면 인제 열이 나고 더워지면서, 마스크 안에 물이 차요. 마스크가 젖어요. 처음에는 94 마스크를 썼어요. 근데 이 안에 물이 흐르면서 진짜 막 물이 막 떨어지는 적도 있을 정도로요.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걱정이 됐어요.”

“거리두기가 전혀 안 됐다. 밥 먹으러 내려갈 때 모든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거리두기 안 된다. 밥 먹는 1시간에 쉬는 시간까지 포함되는데 빨리 먹고 쉬어야 하니까.”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언제인가?) 다 몰린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밥 먹을 때 몰리고. 또 모아놓고 작업량 배분할 때도 몰리고.”

#### (2) 노동자들의 면역은 곧 방역, 그러나 쿠팡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는?

방역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등의 물리적인 조치 이외에도 ‘아프면 쉬기’와 같이 개인의 면역력을 높이거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쿠팡은 노동자들의 신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휴게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마련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있는 식사 시간 역시 불규칙하고 노동시간의 중간에 적절하게 배분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

팡 노동자들의 면역 상태는 매우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오후 조니까 5시까지 출근해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2개 조로 나뉘서 6시 30분~7시 30분, 7시 30분~8시 30분까지 해야 해요. 출근하자마자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1차 다녀오면 6시간 공복, 연장 2시간까지 하면 8시간을 굶은 상태로 일해야 해요. 너무 힘들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감기몸살, 근육통, 장염을 달고 살아요. 워낙에 힘이 들고, 추운 데서 일하니까.”

“추운 곳에서 일하면 배가 쉽게 고프는데 제때 정시에 먹게 하지 않아요. 주문량이 없을 때 먹도록 하죠. 밥 먹는 시간이 고정이에요. 식사가 늦어져 6시 20분에 밥 먹고 7시 20분에 집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전과 낮에 주문량이 별로 없고 새벽이 주문량이 몰리는데 이때, 조금 늦게 식당에 가면 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제 앞에서 밥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은 적도 2번이나 있었어요.”

### (3) 비위생적인 작업복, 작업화 돌려쓰기

쿠팡은 작업복, 작업화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쿠팡 뉴스를 통해 반박했을 뿐 비위생적인 작업복과 작업화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들 역시 악취가 심하게 나는 작업복이나 작업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이에 대해 모욕에 가까운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이다.

“방한복, 안전화가 냄새가 많이 나서 사용하는 직원들은 끔찍 해했다. 이런 걸 건의하거나 부당하다 생각해서 얘기하면 ‘나오지 말라’고 한다. ‘돈 있으면 개인 것 사서 다녀라’고 말하거나.”

## 4) 아프면 쉬기? 아파도, 다쳐도 일하기.

### (1) 빠른 작업속도로 인한 산재와 공상 처리의 일상화

일용직의 경우 물류센터에 근무한 지 8일 차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계약직의 경우 4대 보험을 들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관리자들의 권유(?)를 통해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012년 제작한 <물류창고 종사원의 직업 건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창고업의 특성상 물류창고 종사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형태는 전도(넘어짐)로 약 20%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이 약 18%, 교통사고 약 12%, 충돌 약 10% 순이었다. 업무상 질병 중에는 근골격계 질환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창고업의 산업재해율은 0.81%로 전체 산업재해율 0.65%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2011년 기준) 최근 물류센터가 대형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업재해율은 이보다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일하다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 재계약 여부의 불이익 등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안전교육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방송을 통해 ‘뛰지 마세요’ 등의 안전 공지가 나오지만, 실제 노동자들은 마감에 쫓겨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사측의 안전 방송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일종의 장치라는 것이다.

물류센터 내의 산재사고를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일용직, 계약직이다 보니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다음 날 일하지 않는 방식을 쉽게 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이 아프거나 다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를 함께 조사했다.

“1층 재해 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사고 공지를 한다. 엘리베이터 달릴 때 손이 끼인 경우, 팔레트를 2인1 조로 드는데 들다가 발이 찢어서 발톱이 빠지는 경우. 이동카트에 발을 찢는 경우가 다반사다. 카트를 뒤로 미는 경우에 발이 찍힐 수 있다.”

“(쿠팡에 일하고부터) 근육통이 만성적으로 반응한다. 일하는 사람 전부 다 그렇다. 나는 손목에 건초염이 생겼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어깨가 너무 아프다.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 일 시작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센터도 있다.”

“일하고 일주일 뒤부터 여기저기 문제 있어서 정형외과 다녔어요. 제가 육체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더 그랬을 텐데 실핏줄이 터져서 손이 부었어요. 그리고 손목 그리고 팔 저림이 그렇게 심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갔더니 목디스크라고.”

“옆의 동료가 지게차에 치인 거 봤지만 결과는 못 들었다, 그리고 일하다 쓰러진 여성을 본 적 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여성이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할 정도다. 119에 연락하려고 하니 관리자가 119에 연락하지 못 하게 했다.”

“공상 처리로 하는 경우를 알고 있어요. \*월 \*\*일 어떤 분이 6층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병원을 가자는 이야기를 안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2시 퇴근까지 일했어요. 관리자가 ‘그다음 날 병원을 가라’고 했죠. 병원을 가기 전에 안전 보건 팀에 연락해서 지정병원 어딘지 물어보니 계양구에 있는 세정병원 가라고 하면서 ‘공상으로 처리해주겠다. kb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그쪽에 청구하면 된다. 일당은 주휴 미인정으로 신청을 하라’고 했답니다. ‘주휴는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렇게 하면 병가처리 안 된다고 해서, 쿠팡치에 ‘주휴 미인정(무급)’으로 올렸대요.”

## (2) 아프면 쉬기? 집단감염에 오히려 역행한 병가제도

쿠팡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특수를 맞이했다. 가장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고 밀집의 공간에서 몰려드는 작업을 하는 조건에서 쿠팡이 ‘아프면 출근하지 말 것’을 노동자들에게 방역지침으로 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병가제도를 마련했어야 한다.

쿠팡은 근무 전에 ‘진료확인증’을 제출해야 그나마 ‘무급 병가’ 처리된다. 인터뷰 내용 중 “당일 몸이 안 좋고 열이 나서 쉬다고 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된다.”는 것처럼 쿠팡의 병가제도는 오히려 감염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고밀도의 밀폐, 밀집 작업장에서 24시간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무급 병가 휴가 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은 감염의 위험을 증폭시

켰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대응해야 할 조건마저 박탈하고 있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한 바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지침은 쿠팡에서 무력화되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총괄 조정관)은 “부천물류센터 초발 환자가 첫 증상을 느낀 것이 13일로 기억하는데 아프면 3~4일 쉬어야 한다는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초발 환자가 아픈 상태로 계속 물류센터로 출근하면서 직장 내 감염 확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조선일보, 5월 27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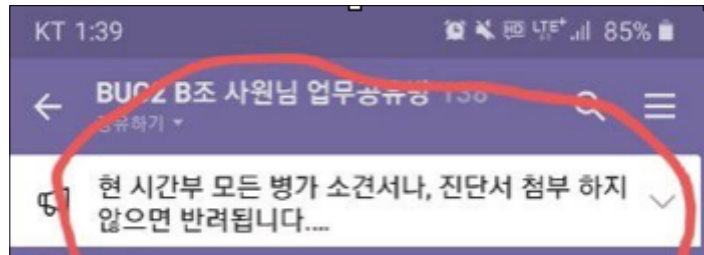
문제는 노동자들조차 어떤 조건에서 병가를 낼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인터뷰 내용 중의 많은 응답내용들은 ‘3일 전에 허락을 받아야 병가를 낼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도 제대로 병가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아프면 쉬기가 안 되는 게 여기는 3일 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당일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열이 나서 쉬다고 하면 무조건 결근이니까.”

“관리자들이 규정을 알려주지 않아요. 결근이나 병가 연차 등에 대한 규정을 물어 보면 (관리자들이) 말한 것과 다르게 처리되는 게 많아요. 관리자들 마다 말이 다르고. 발가락 골절로 병가 이틀을 쓰려고 단독방에 병가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당일 병가신청은 무단결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어요. 출근 20분 전에 당일병가가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 이후 부천물류센터가 7월 2일 이후 재오픈 되었을 때 병가제도는 오히려 집단감염에 역행하고 있었다. 집단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동자들이 몸상태가 좋지 않으면 병가를 적극적으로 내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병가 제출서류를 ‘진료확인서’에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로 격상했다. 진단서는 일반병원에서 2만원 가량의 별도 비용을 들여야 해서 노동자들의 부담은 높아질

수 밖에 없었고, 계약직 사원들 중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 아파도 출근하는 경우들도 나왔다.



<그림 II -6> 단톡방에 올라온 병가관련 공지사항

아파서 쉬어야 하는데, 당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병가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관련 서류는 병가 후 사후적으로 제출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오히려 충분히 쉬어야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진료확인증이나 진단서를 끊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시대에 취약함을 넘어 공공의 방역과 노동자의 건강에 역행하는 것이다.

## 5) 거대한 물류센터에서 노동자의 공간은 어떻게 사라졌는가?

작업장은 노동자가 노동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다. 노동을 위해, 정신과 신체의 회복과 재생산을 위해 충분히 쉬어야 하고, 식사해야 하며, 업무에 대한 지식과 훈련을 습득하는 곳이고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 알권리가 있으며 자신에게 부과된 업무나 작업환경의 위험에 대해 주변 동료들과 관리자에게 알리고 대처할 권리가 있다. 즉 작업장은 사업주의 지시와 생산계획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동자의 공간도 함께 존재해야 한다.

부천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사측의 지시에 따라 초 단위로 움직이고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이 물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횟수도 철저히 통제할 수



밖에 없었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도 존재한다. 화장실은 매 층에 남녀화장실 각각 2개 칸이 전부였고, 특히 여성 화장실은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등에 길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작업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나가야 했다.

작업 중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는 그 넓은 창고 안에 단 하나도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라도 쉬려고 하면 바로 지적이 들어왔다. 물량을 다 소화할 경우에도 쉴 수 없었고, 몇 시간 동안 대기하는 장소에서 서 있게 했다.

물류센터의 넓은 공간은 속도와 생산량 데이터로 대체되면서 노동자의 공간은 사라지게 되었다. 물량이 없는 날은 이동도 못 한 채 한 자리에 서 있게 했다.

“저번 주까지는 물량이 없어서 밥 먹는 시간 외에 한 자리에 이동도 못 하고 서 있었어요. 쉬게 앉거나 바닥에 앉지도 못 하게 하죠. 체스판에 사람들을 말처럼 몇 시간 동안 서 있게 해요. 밖에 가서 바람 좀 쐬러 가게 하지도 않아요.”

조별로 100명에서 200명가량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은 통해 해당 관리자들이 업무 지시나 기타 공지사항을 내보내지만, 그 카톡방에 병거나 임금 관련 문의를 해도 제대로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다.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의 노동자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이나 임금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며,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각자의 경험치에 의존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매우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단체 카톡방은 소통이 아니라 지시를 위한 것으로 존재했고, 그 안에서 어떤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재계약 등의 불이익이 있어왔다고 노동자들은 자신과 주변 동료들의 경험치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자 공간의 부재, 소통공간의 부재는 코로나19라는 집단감염의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였다. 쿠팡 측은 노동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취합된 데이터를 통해 업무지시를 내렸으며, 데이터에 취합되지 않은 정보는 정보로서 무용했다.

최초 확진자가 나온 뒤, 노동자들은 확진자의 근무일과 작업 동선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쿠팡은 이를 묵살했다.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자가격리 대상자를 호명하고, 밀집된 노동자들에게 되려 '안전하다'라고 말한 행위는 쿠팡 측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노동자의 공간을 없애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해왔었던 연장선 하에 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권한과 권리가 있을 리 만무하다. 물류센터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옮겨 다니면서 사라졌으며, 이와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 또한 부재한 상태로 놓여있었다.

### 3. 쿠팡은 왜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힘 쓰지 않는가

쿠팡의 초기 대응 과정과 그 이후의 대응을 살펴보면 쿠팡의 세 가지 주장을 관통하는 쿠팡의 두 가지 의식이 드러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쿠팡이 '쿠팡 뉴스룸'이라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전하고 있는 방역과 관련된 일관된 입장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자신들은 코로나19와 관련 "충분한" 방역 조치를 수행해오고 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방역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일본의 지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신들은 일본의 지침에 따른 충분한 방역을 해왔으므로 부천센터의 집단감염의 원인은 외부(이태원 학원강사)에 있다.

이러한 쿠팡 측의 논거에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두 가지 상황인식이 깔려있다. 첫째, 쿠팡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노동자의 삶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가 아니라 쿠팡의 넓어진 '시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물류와 운송업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쿠팡 풀필먼트와 쿠팡이츠, 쿠팡맨(쿠친)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쿠팡은 국내 최대 규모로 이러한 호황의 중심에 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 하루 주문량이 180만 건 내외에서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300만 건 이상으로 폭증했다.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 자회사 가운데 유일한 흑자 기업이다. 쿠팡은 물류센터를 더욱 공격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단기간에 최대한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속도전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안전은 매우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심지어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까지 선진 경영을 습득해 온 김범석 쿠팡 회장의 경영방식은 역설적이게도 '디지털화된 후진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쿠팡의 경영방식을 비난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고질적인 노동자

의 건강과 안전을 경기하는 기업문화가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쿠팡에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쿠팡과 같은 고밀도 작업장은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 장소에 속하지만 쿠팡은 기업의 성장에만 몰두했을 뿐 노동자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선택에는 쿠팡이 절대 다수의 일용직과 계약직으로 운영된다는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쿠팡은 노동자들의 숙련을 통한 효율성 대신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른 효율성을 신뢰한다. 쿠팡은 안정된 직장에서의 일의 효능보다는 내부의 성과 관리체계를 통해 통제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방법을 더 선호한다. 불안정 노동자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노동자의 통제와 착취구조를 데이터화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은 일견 선진적인 기법을 동원해 경영방식을 혁신하지만, 그 혁신의 방향을 과거로 향한다. 법에 대한 기업의 규제가 가장 약하던 시절, 국가가 노동에 대한 보호를 방기하던 시절로의 퇴행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작업장의 위험이 어떻게 증폭되는지를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쿠팡이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쌍수 들고 환영하던 영역이 기실 노동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마음껏 확보하고 다니게 만든 것의 효과이기도 하다. 일상적인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이뤄졌더라면 쿠팡이 방역지침을 수용하는 태도는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또한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어떻게 집단감염의 위험한 현장이 될 수 있는지를 구로 콜센터와 함께 쿠팡이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을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게 하고 데이터처럼 취급하는 곳에서 바이러스는 노동에 가해지는 폭력에 들러붙었으며, 노동자의 권리가 부재한 곳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이 증폭되었다.

둘째. 이러한 상황인식하에서 쿠팡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최소주의 대응을 채택했다.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는 노동자는 작업대에서 바로바로 퇴출해도 코로나 고용위기로 인해 노동인력이 넘쳐나는 상황, 이 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이윤의 축적에 주력했다.

일본의 방역지침은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것으로 간주되면서 적극적인 예방과 방역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앞서 구로콜센터의 집단감염 사례역시 어떠한 참조점이 되지 못했으며, 인천6센터의 확진 사례역시 위험의 신호로 감지하지 않았다.

총체적으로 쿠팡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의 신호를 감지할 만한 안전의 노력이나 의지가 부재했다.

부천 쿠팡에서 일하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감염된 전\*\*님의 개별적인 문의에서 쿠팡측이 “코로나는 국가재난 상황이고 보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방역이 적시에 이루어졌고 회사도 처음 겪는 일이라 회사 잘못은 없다.”고 답변한 것은 쿠팡의 상황인식이 어떠한 것인지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쿠팡은 여전이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면서 방역당국과 노동자들의 방역 실패의 지적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이 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에 대한 환경조사(류호정 의원실 제공) 내용에 따르면 ‘직접 비말접촉에 의한 감염기전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며,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등 공용으로 인한 개달물 전파 가능성도 있’으며,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2층과 2.5층의 각 작업공간(Line)은 매우 협소해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환경검체 결과 2층의 공용 안전모와 공용 PC 작업대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불철저한 소독, 밀집된 작업공간, 작업자의 이동이 매우 활발하도록 만드는 작업통제방식, 마스크 착용 관리 소홀, 매우 협소한 식당과 휴게공간, 식당의 칸막이 미설치 등 쿠팡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높은 노동강도에 더해 매우 형식적인 방역이 중첩되어 최초 확진자가 근무한 12일에 가까운 위치에서 작업했던 노동자들에게 전파가 되었고, 이들이 근무를 지속하면서 2층 전체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 검체 결과

<표1. 쿠팡 물류센터 환경검체 검사결과 양성>

연번	장소	검체명	검사결과
11	2층	2층 G2line Pabin BUC2 2F FrF 06set B&PC	RdRp 35.2 / E 35.4
15	작업장	2층 안전모	RdRp 35.2 / E 35.1

<그림 II-7>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부천물류센터 환경조사내용(류호정 의원실 제공)

이로부터 방역당국이 파악한 부천물류센터의 집단감염의 원인은 아래와 같다.

“결론적으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감염 전파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라는 감염관리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생각된다.”

(박소영 직업환경의 자문의견,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부천 물류센터 환경조사서)

“최초환자 확진(5.23.) 이후, 근무 과정에서 직원 간 감염이 발생하였으며, 퇴근 후 가족 및 지인이 추가로 감염되어 이후 다른 사람에게(직장동료 등) 전파를 일으키는 감염경로를 보임”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 조사팀, 류호정 의원실 제공)

쿠팡의 초기 대응은 한마디로 집단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의 부재, 바이러스 감염상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의 부재, 기업의 안전배려 의무의 방기로 볼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위험이 기업의 위기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책임에 대해 우리사회가 더 철저하게 묻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극단적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이러한 노동자의 위험이 기업의 위기로 전환되는데 일종의 방어막 구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의 한계역시 드러났다. 코로나19라는 감염상황은 노동의 불안정한 조건이 바로 감염의 진앙지가 될 수 있음을 쿠팡 사태를 통해 드러내 준 것이기도 하다.

작업장의 방역은 정부의 지침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정부 지침을 따른다는 것만으

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작업장의 특수성, 업무상의 관행, 조직문화 등이 고려되어 방역조치가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의 역할은 모든 작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세세한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효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규제에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업장 집단감염에 대해 정부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는 사고의 원인규명과 기업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를 법의 미비로 뒤로 미룰 수 없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서 행한 수많은 행정조치나 긴급한 조치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이미 법의 해석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해왔다.

작업장의 방역지침은 노동자 개별의 책임과 의무의 총합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과 2미터 거리두기조차 작업장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지켜지기 힘들다. 작업장은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장소이며, 안전보다는 효율이 강조되기 쉬운 장소이다. 따라서 작업장의 방역은 곧 사업주의 경영방침에서 방역을 우선 순위로, 노동자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우선하여 작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현장 노동자들은 방역의 주체이지 방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위험한 환경을 매우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능동적인 방역을 하기 힘들다. 쿠팡이 초기 대응에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은 현장 노동자들을 방역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은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쿠팡이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인 것도 여전히 같은 이유이다.

---

6)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본 보고서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법의 미비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작업장 집단감염이라는 문제를 소홀히 다루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중대재해의 기준 중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내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인근 지역의 피해를 포함하는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쿠팡 부천센터의 경우 역시 이에 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 집단감염 이후 방역실태와 문제점



## 1.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보여주기식의 방역실태

피해노동자들의 가족과 지인 포함 152명의 집단감염 이후 쿠팡 부천신선센터는 5월 25일 폐쇄되었다가 7월2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물론, 이렇다 할 재발방지 대책은 없었다. 재가동 직후 몇 가지 바뀐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보여주기식이었다. 물류센터는 이동이 잦고 혼재되어 일하는 노동환경, 밀접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특성이 있기에 철저한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고, 환기도 어려운 조건이다. 하기에, 마스크, 소독제 정도도 충분한 방역이라 할 수 없다. 의심 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도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밀접접촉자를 찾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쿠팡은 일부 물품을 지급하고,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 1) 불충분한 방역물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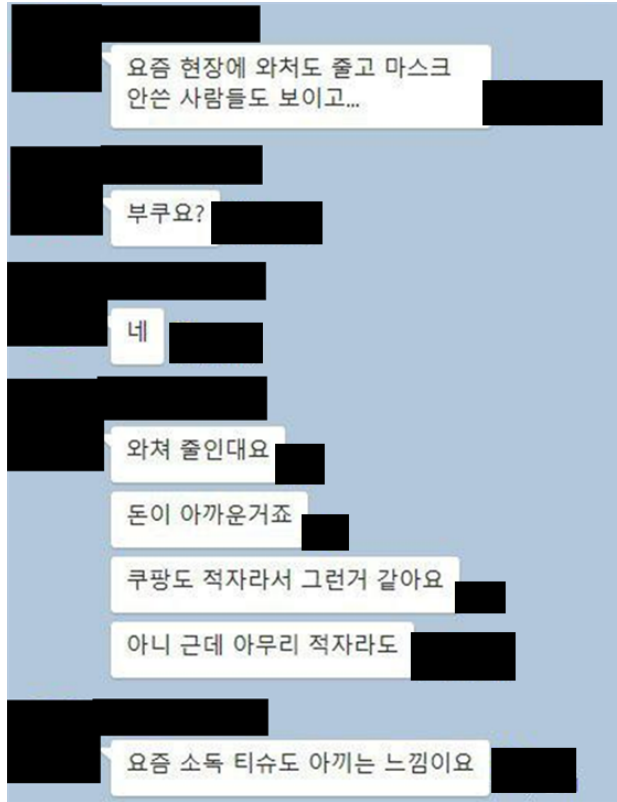
#### (1) 손 소독제와 세정용 티슈

집단감염 이후 출입구와 식당의 정수기 위 정도에만 비치되어 자주 사용하기 어려웠던 손 소독제가 휴게실, 작업 공간 등에 좀 더 비치되었다. 업무용 컴퓨터 옆에 소독제와 세정용 티슈가 비치되어 사용 후에는 닦도록 하였다. 모니터, 정수기 등에도 먼지가 수북할 정도로 소독은커녕 청소도 하지 않다가 재가동 이후에는 어느 정도 청소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소독제와 같은 소모품은 다 써도 채워지지 않았고, 설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쓸 때마다 컴퓨터를 티슈로 닦아가며 일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각자 컴퓨터 옆에다 다 비치를 했다. 소독제랑 환경 티슈, 기기를 청소할 수 있는, 그 뿌리는 분무 스프레이식으로 된 거. 근데 그거 지금은 다 떨어지고 없더라. 손 소독제만 남아 있더라. 솔직히 손 소독제도 장갑을 끼고 일을 하기 때문에 화

장실이나 갔을 때 손을 씻지, 현장 안에서 거의 손 소독제는 쓸 시간도 없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공용) 노트북에서 뜨는 소독 알람에 맞춰 소독할 수가 없다. 가라로 소독했다고 체크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 물량은 5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치로 표현하기에는 어렵다.”



<그림 Ⅲ-1> 쿠팡 노동자들의 대화내용.

시간이 흐르면서 쿠팡의 방역조치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2) 방한복, 작업화 등

집단감염 이전 세탁도 하지 않은 채 돌려 입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방한복과 작업화 등의 작업복이 개인 지급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쿠팡은 뉴스룸에서 “부천신선

물류센터 코로나19 감염 발생 이후 모든 신선물류센터에서 방한복, 방한화를 재사용할 경우 전문업체를 통해 세척을 한 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노동자들은 ‘세탁은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다, 매번 땀에 젖는데도 매일 세탁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위생상의 문제는 여전하다’ 증언했다.

“(방한복 등의) 세탁은 자기가 해야 한다. 탈의실을 만들어 놓아서 옷걸이가 다 있다. 거기에 걸어놓고 가고. 위아래 옷이 붙은 거 우주복 같은 거 날마다 세탁하기 힘들다 솔직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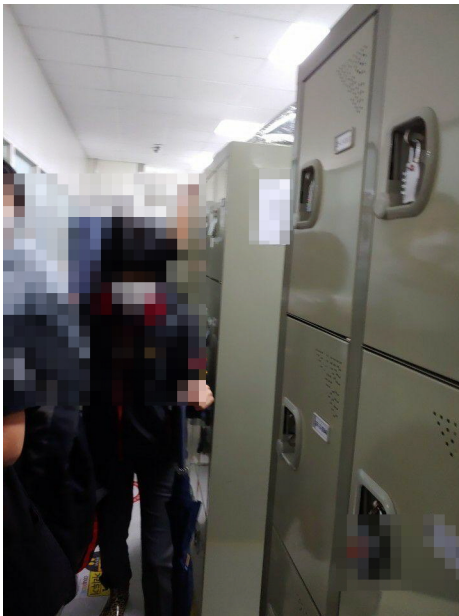
## 2) 불가능한 거리두기

### (1) 통근버스, 복도, 식당, 휴게실, 라커룸,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의 거리두기

통근버스는 증차해서 한 칸에 한 명씩 앉도록 하고, 식당은 점심시간과 식사 조를 늘려 식당의 밀집도를 줄이고, 투명칸막이를 설치, 일렬로 앉아 식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과 식당에서 줄을 설 때는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거리 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이다. 한 번에 탈 수 있는 인원을 7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 거리 두기란 불가능하다. 라커룸 역시 다닥다닥 붙어있어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거리두기를 지켜가며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비좁은 휴게실에서 거리 두기를 지키라는 이야기는 휴게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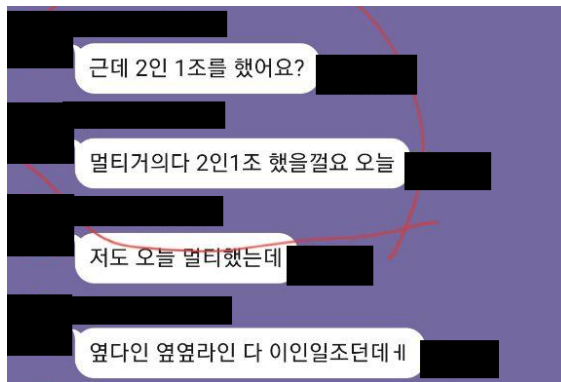
<그림Ⅲ-2> 출퇴근 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한꺼번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고 밀착해서 줄을 서야 한다.



<그림Ⅲ-3> 락커룸의 모습. 락커룸을 사용할 때도 짧은 시간에 옷을 갈아입고 소지품을 두고 작업공간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옆 사람과 밀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

### 3) 작업 시 거리두기

재가동 직후에는 적은 물량만을 소화했기에 수시로 오가던 근무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2인 1조, 3인 1조로 일하던 방식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거리두기 앱을 만들어 작업용 PDA에 설치해 다른 작업자가 다가오면 알람이 울려서 서로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물량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다시 지켜지지 않았다. 2인 1조 작업이 다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업무 특성상 노동자 간 동선은 수시로 교차했다. 대안으로 만들었다는 앱은 불안정해서 효과가 없었다.



<그림 Ⅲ-4> 노동자들의 대화 내용.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2인 1조 작업. 두 노동자는 밀착해서 일을 해야 한다.

“쿠팡은 정부에서 하라는 거 다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부에서 하라고 한 게 뭔지도 모르겠고 거리두기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정부에서 쿠팡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한 것 같다. 미심쩍다. 쿠팡은 거리두기 자체가 안 된다 전산에 올라온 물건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가 얼마나 잘될까 싶다.”

“PDA에 거리두기 앱을 깔아놨다. 미터 가까워지면 울리도록 쿠팡 자체가 개발한 것이다. 그런데 옆에 가져다 놔도 안 울린다. 별로 효과가 없다.”

#### 4) 물류센터 특수성을 무시한 쿠팡의 방역 조치들

쿠팡은 부천신선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출근해서야 그 사실을 들었고, 당일에도 평소대로 일해야 했다.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이후에도 쿠팡의 대응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곧바로 모든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밀접접촉자를 가려내 그 노동자들에게만 통지하고 있다. 협소한 기준과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접촉자임에도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 (1) 잦은 자리 이동과 수시로 교차하는 노동자들 간 작업 동선

대부분이 계약직, 단기일용직 노동자인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은 언제 어떤 자리에서 일하게 될지, 누구랑 일하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근무 후에도 동선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집단감염 이후에도 여전한 상황이다.

“그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속도가 좀 느린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차출해서 아래층으로 보냈다가 왔다 갔다 시키거든요. 수시로요. 여기에 물건이 막 몰리면 불려서... 원래는 자기 거 아이디치고 들어가는 거지만 바쁠 때는 보조로 들어가는 사람은 기록이 안 남아요. 2인 1조로 막 시킬 때...”

##### (2) 접촉자 파악을 어렵게 하는 고용불안정

재가동 초기에는 근무지 이동을 줄이고, 2인 1조로 일하는 빈도 역시 줄었다. 그러나 이것은 재가동 초기 부천신선센터의 물량을 조절해서 단기일용직을 많이 채용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물량이 적정하고, 고용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 가능한 일이다. 물량이 회복되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다시 지켜지지 않았다. 2인 1조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어디서 일했는지 기록도 남지 않고 함께 일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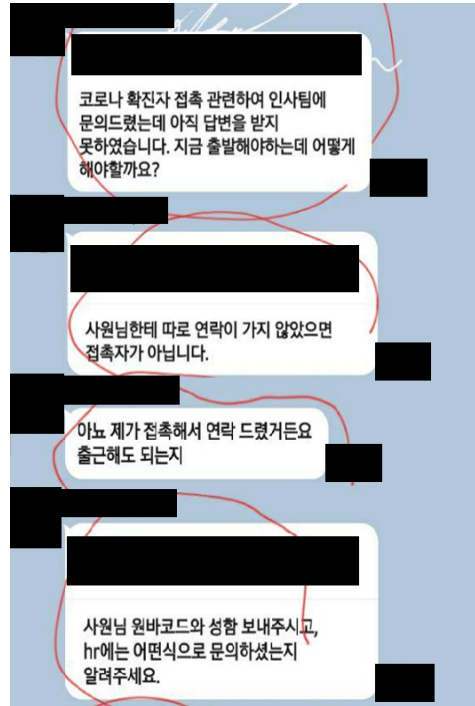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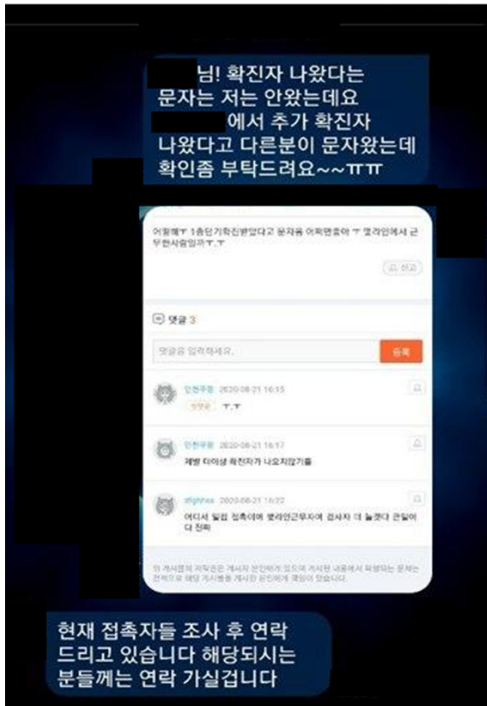
“(재가동 직후) 자리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쪽이 바쁘면 로그아웃하

고 저기 가서 다시 로그인했는데 지금은 이동이 안 되고 그 자리에 무조건 그 사람만 쓰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량이 많지 않아서 가능한 거 같아요. 지금은 물량을 조절하더라고요. 일용직들은 아직 안 뽑거든요. 계약직만 해놓고. (물량이 없어서) 굳이 일용직 뽑지 않고 확실한 신원이 되는 분들만 하다 보니까 자리 이동 없이도 그 사람이 근무한 시간에 계속 있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재가동 이후 증상자 있다고 검사하라고 한 게 벌써 세 번째인데 앞 두 명은 음성인 걸 문자로 통보해줬고, 뒷사람은 안 왔다. 여튼 문자로 의심자 발생한 것과 발생 장소를 알려준다. 그런데 문제는 2인 1조, 3인 1조로 일하는데 기계는 하나라서 기계 가진 사람만 동선이 확인된다. 그리고 매일 다른 사람랑 일하니까 이름도 모른다.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려면 기계가 충분해야 한다. 보여주기가 쉽다.”

### (3) 기준이 불분명한 쿠팡의 협소한 접촉자 분류

집단감염 이후에도 부천신선센터는 의심 증상자가 세 차례 발생했었다.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때도 쿠팡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의심 증상자가 발생했지만, 즉각 모든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쿠팡에서는 밀접접촉자를 찾아, 조치했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업무 동선이 유동적이고, 완전히 기록으로 남기도 어려우며, 노동자들 자신도 자기가 일했던 동선과 누구와 일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고 대처했는지 불분명하다. 의심 증상자와 접촉을 했던 노동자가 쿠팡이 파악했던 접촉자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집단감염이 있었지만, 여전히 쿠팡은 노동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통하지 않고 기준을 알 수 없는 일방적인 조치들만 취하고 있을 뿐이다.



<그림 Ⅲ-5> 노동자와 관리자와의 대화내용(좌-타 센터 / 우-부천센터 사례).

쿠팡은 집단감염 이후에도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해도 근거리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조차 공지가 누락되는가 하면 의심 증상자가 발생했을 때도 접촉했던 노동자가 있었으나 연락이 가지 않은 사례도 있다.



## 2. 안전감시단(와처)의 운영과 쿠팡의 “코로나19 수칙 준수 강화 프로그램”

쿠팡은 7월 9일 언론보도를 통해 2,400명의 안전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알렸다. 쿠팡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로켓배송센터에 2,400명 규모의 안전감시단(물류센터 1,900명, 배송캠프 500명)을 운영할 것이며, 안전감시단은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예방 프로세스를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홍보했다.

”물류센터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부터 안전감시단은 활동을 시작한다. 버스 안전감시단은 통근버스에 오르는 모든 직원의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을 점검한다.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은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 공정 안전감시단은 물류센터 출입구와 식당, 휴게실 등 공용공간을 비롯해 직원들의 주요 동선과 각 공정에서 거리두기 실천과 손 소독제 사용을 독려한다.“

(7월 9일 자 쿠팡 뉴스룸)



<그림 Ⅲ-6> 쿠팡이 자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안전감시단의 역할

## 1) 안전은 없고 감시만 남은 와처의 역할

안전감시단은 현장에서는 ‘와처’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실제로 ‘체온 측정 및 신분증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사용 독려’, ‘작업장 내 거리두기 관리’ 등의 역할을 현장에서 수행했다. 버스 와처는 통근버스의 시작 지점에서 탑승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이후 탑승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거리를 두어 앉도록 관리했다. 현장 와처 역시 출입구와 식당, 휴게실 등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내리지 못 하도록 하고, 서로 대화하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못 하도록 거리 두기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대해 노동자들은 안전 조치라기보다는 감시를 당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었다.

“와처라고 계약직 중에서 뽑더라구요.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식당 앞에 있거나 어떤 사람은 탈의실 앞에 서서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안 한다던지 마스크를 안 쓰고 걷는다든지 하면 보고 지적을 해요. 만약에 친한 사람들끼리는 옆에서 붙어서 얘기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신랑인데도 같이 있으면 떨어지라고 하고, 마스크 위까지 쓰세요. 이런 분들이 참마다 있었어요.”

“(8월 중순 이후 와처의 권한 강화 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적 받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고 사람들이 싫어한다. 거리두기, 마스크 몇 초 이상 지속 될 경우 이름을 적는다고 한다. 이런 식이니까.”

급조된 2,400명의 안전감시단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정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일은 안전보다는 강압적으로 독려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되어갔다.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외에 방역에 대한 독자적인 역할과 근본적 개선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한 안전감시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일뿐이었다. 결국, 안전은 없고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만이 남았다.

감시와 통제의 방식으로 작용하는 방역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쿠팡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안전감시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수칙 준수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공

지했다.

## 2)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방역의 책임

8월 중순경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던 무렵, 쿠팡도 인천2배송캠프, 인천 4물류센터, 일산1캠프, 잠실 본사, 고양물류센터 등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물류센터에서만 10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sup>7)</sup> 9월 4일 송파2캠프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송파1·2캠프에서는 9월 20일 현재까지 총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8/15 인천2 배송캠프 1명	8/19 인천4 물류센터 2명	8/22 일산1 배송캠프 2명	8/24 잠실 본사 1명
9/5 고양 물류센터 1명	9/4 송파2캠프 1명 발생 이후 송파1·2캠프 총 16명	9/3 군포 배송캠프 1명	8/31 서초1캠프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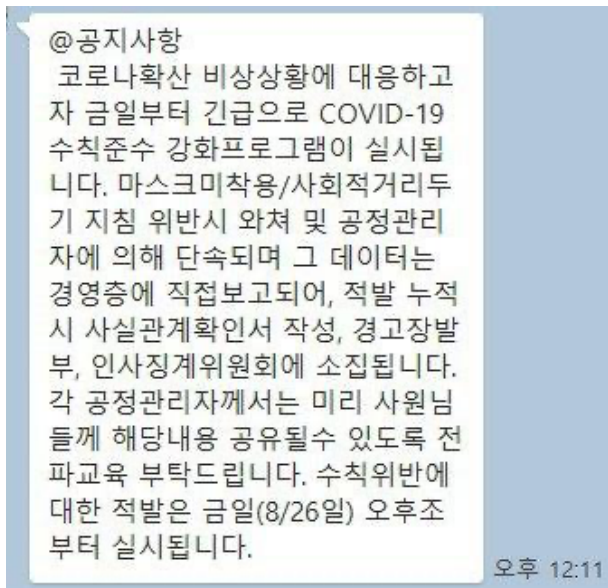
<표Ⅲ-1> 부천신선센터 집단감염 이후 쿠팡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쿠팡에서 취한 조치는 “코로나19 수칙준수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공지하고, 감시·통제자로서의 와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수칙의 내용을 보면 마스크를 상황에 따라 1초 또는 10초 이상 내리고 있었다거나, 다른 노동자와 1m 이내의 거리에 10초 이상 있었다거나 하는 것이 적발될 시 2번째에는 반성문(사실관계확인서), 4번째에는 경고장, 6번째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감시와 지적의 역할을 하던 와처에게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노동자의 이름 및 개인정보(연락처)를 받아 적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7) 관련기사 「연일 확진자 속출, 쿠팡 물류센터 직접 일해 보니」, 비즈한국, 20/9/9

위 내용을 보면 동료 간 대화는 철저하게 금지되고, 작업장, 식당 심지어는 휴게실과 라커룸에서조차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설 새 없이 돌아가는 작업장에서의 거리 두기 대책은 부재하고, 라커룸과 휴게실은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쿠팡은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는 한정된 공간, 시간 내에 많은 물량을 완료해야 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그대로 둔 채 인센티브를 주며 신규채용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다. 부천시선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집단감염으로 확산됐다. 그런데도 쿠팡은 여전히 물류센터의 환경과 업무의 특성상 지킬 수 없는 수칙을 만들어 방역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고, 회사는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쿠팡의 근본적 대처가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쿠팡에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림Ⅲ-7> 코로나19 수칙준수 강화프로그램에 대한 쿠팡의 공지 문자.  
 적발 시 징계 절차가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 COVID-19 수칙 준수 강화 프로그램

목적: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의 문화를 정착하여 우리 FC를 COVID-19로부터 보호하여 가장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 COVID 수칙 위반 행위의 종류

#### 마스크 착용 관련

번호	모니터링 항목	위반 지속시간	위반 여부
1	식음료 취식 또는 흡연시 마스크를 잠시 내렸으나 다른 작업자와 대화하지 않았을 경우	-	아니오
2	식음료 취식 또는 흡연시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다른 작업자와 대화했을 경우 (흡연장 대화도 마스크 착용시에만 가능)	1 초	예
3	식음료 취식 또는 흡연 중이 아님에도 마스크 미착용 상태일 경우 (예. 숨을 고르거나 안경을 닦기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는 있으며 이 경우는 수칙 위반이 아님, 다만 그 시간이 10 초를 넘겨서는 안 됨)	10 초	예
4	공정구간에서 다른 작업자와의 간격이 1m 보다 가까울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나 코와 입을 완전히 덮은 상태가 아닐 경우	10 초	예
5	출퇴근, 식사, 휴식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순간적으로 1m 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마스크를 잠시라도 내렸을 때 (코와 입을 완전히 덮은 상태가 아닐 경우)	1 초	예

#### 사회적 거리 두기

번호	모니터링 항목	위반 지속시간	위반 여부
1	이동시 우연히 1m 내로 10 초 이내로 유지되었을 경우	-	아니오
2	한 명 (A)이 등을 돌리고 있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B)이 1m 내로 들어와 10 초간 유지되었을 경우	10 초	A: 아니오 B: 예
3	의도적으로 두 명 이상이 이야기하며 함께 1m 내로 10 초 이상 유지되었을 경우	10 초	예
4	두 명 이상이 식당, 라커룸, 휴게실, 흡연장에서 1m 내로 10 초 이상 유지되었을 경우	10 초	예
5	공정구간에서 다른 작업자와의 간격이 1m 보다 가까운 상태로 10 초 이상 유지되었을 경우	10 초	예
6	고의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경우	즉시	예

<그림Ⅲ-8> 쿠팡의 코로나19 수칙준수 강화 프로그램의 내용. 마스크를 상황에 따라 1초 또는 10초 이상 내리고 있을 경우, 거리두기가 10초 이상 안 지켜졌을 경우 등 세분된 항목에 따라 적발 시 2번째에는 반성문(사실관계확인서), 4번째에는 경고장, 6번째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 3. 소결

#### ○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보여주기식의 방역실태

집단감염 이후에도 쿠팡의 방역실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보여주기식이었다. 쿠팡은 2,400명의 안전감시단을 고용하고, 거액의 임금을 써가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소독 물품 관리 등 일부 방역 조치들은 임시방편일 뿐이었으며, 완전한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고 이동이 빈번하며, 고용이 불안정해서 불특정한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물류센터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안전감시단은 마스크와 거리두기 같은 행동 수칙을 감시하는 정도의 역할을 부여받았을 뿐이다. 물류센터의 특수성 때문에 의심 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도 밀접 접촉자를 빠르고 확실하게 가려내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통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감염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

#### ○ 안전은 없고 감시와 통제만 남은 방역 조치

몇 가지 행동 수칙을 감시하라고 지시받은 안전감시단의 역할은 말 그대로 감시자가 되었고, 또 하나의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는 감시와 독려의 방식이 된다. 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바빠 움직여야 하는 일과 속에서 줄을 서느라 더 많은 시간을 서 있게 되고, 휴게실에서 쉬는 것도 불가능하며, 동료 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

부천신선센터 집단감염사건 이후에 다른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자 쿠팡은 구조적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할 것을 경고하며 감시와 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 ○ 방역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며, 기업의 책임을 방기하는 쿠팡

결국 쿠팡의 방역 조치란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배려이기보다는 다른 이름의 노동

통제일 뿐이다. 마스크를 몇 초 이상 내리고 있으면 안 되고, 10초 이상 동료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는 식의 수칙과 제제는 노동자의 (방역 효과 없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방역의 책임을 돌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작용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도 제기되고 있듯이 마스크와 거리두기라는 개인 방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임시방편일 뿐이다. 쿠팡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지켜 노동자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IV

# 쿠팡 부천신선센터 노동자들의 피해와 쿠팡의 대응



## 1. 감염병 확산 사건을 중심으로 본 노동자들의 실태

### 1)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과 경제적 문제들

#### (1) 신체적인 후유증

최근 코로나19를 겪은 후 완치된 사람들이 겪는 후유증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확진자 중 35%가 후유증을 경험했다고 한다.<sup>8)</sup>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알려지며, 한국 역시도 후유증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의 노동자들 가운데에도 코로나19는 완치되었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후유증이 좀 심해서 계속 병원을 다니는데 병원에서는 뚜렷하게 의학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팔이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근육통이 켈 심해요. 근데 이 근육통은 MRI까지 찍었는데도 이상은 없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약만 먹으면서 경과만 보고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며칠 만에 발이 아프고... 팔도 잘 못 쓰구요. 손가락도 마디가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그런 게 좀 있으니까 했는데, 생각해 보면 다 확진되고 나서 아픈 게 생겨가지고. 정형외과 가서 검사를 받아보려고 해요. 이걸 (의사)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검사를 하는데 꼭 ‘코로나 확진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검사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쿠팡 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야간노동,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손목터널증후군, 목디스크 등 일상적으로도 질병에 시달려왔다. 아프면 쉴 수 없는 현장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으로 건강을 살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치료 이후로도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악화와 후유증, 업무의 특성이 결합된 복합적인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8) 정성원, 질병청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후유증 임상 연구과제 중", 뉴시스, 2020.9.22

“물류다 보니까 서서 일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지 쪽, 무릎 밑으로가 다 그래요. 조금만 서 있어도 밤에가 켈 심하게, 누워있어도 통증이 계속 와서, 사실은 근무가 아예 힘든 상황이라서. 근데 그래도 저도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만 둘 수가 없으니까 병원 다니면서 약만 먹고 있거든요. 약을 먹으면 좀 통증이 나아져요. 근데 이게 솔직히 영구적일지 평생 약을 먹어야 할지 모르니까...”

## (2) 가족으로 이어진 감염과 건강문제

코로나19의 특성상 감염이 확산되었고, 노동자의 가족으로 이어졌다. 쿠팡의 부실한 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세 식구는 경증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입원했어요. 셋 다 직접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요. 나는 입원한 지 3~4일 만에 미각, 후각 반응이 왔었고, 딸이 1주일 만에 그랬고, 남편은 입원하고 며칠 있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위층에 집중치료실이 있다고, 거기는 인공호흡기 끼고 수액 넣고 하는 곳인데 그쪽으로 올려 보냈어요. 그러면서 열흘째 되는 날에 완전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에크모 치료를 하려고 길병원으로 가는데 앰블런스에서 심정지가 왔대요. 5분 동안 CPR을 했다고 하는데 뇌 손상이 와서 두 달이 다 돼가는 지금도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한 노동자의 가족은 위중한 상태로 여전히 투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터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집단감염의 사건에서, 노동자가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쿠팡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회사의 조치는 없었어요. 남편이 위중하다고 했을 때 내가 회사에 전화했어요. 근데 돌아온 답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게 전부였죠. 자기들도 피해자라고만 말했어요.”

“회사의 대책이라고 하는 건 무대응이에요. 그게 대책이에요. 이후에도 계속 일관됐고요.”

### (3) 심리적인 충격과 상처

#### ①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과 상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신체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심리적인 후유증에 대한 보고가 많아지고 있다”<sup>9)</sup>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을 경험한 이들의 경우 일종의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sup>10)</sup>를 경험하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쿠팡의 피해 노동자들도 격리와 치료 과정을 경험하면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증언했다.

“감염병엔 1인 1실이 원칙이에요. 혼자 있으니까 밤마다 얼마나 불안하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뉴스 보면 후유증 얘기도 나오고 코로나로 사망한 이야기 나오고. 4~5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니까.”

“코로나 검사해도 양성 나오니까 막말로 이거 완화된 규정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구 제가 뭐 비약이 심할 줄 몰라도 음성 안 나오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부모가 죽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면회도 못 오고, 이게 그래서 감염병이 무섭고... 고통스럽고 무서웠어요, 굉장히.”

“퇴원 즈음해서 국가 트라우마센터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 간혀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인이 회사 아닌가요? 피해보상이 전혀 없으니까.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② 쿠팡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분노

집단감염 사건 이전부터, 쿠팡은 빠른 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자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이거나, 모욕감을 주는 등의 통제전략을 사용해왔다. 이러한 통제 방식은 노동자들에게 침묵과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했다. 일터의 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

9) 이대희, 방대본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후유증...연구 진행 중“, 프레시안, 2020.09.04

10) 이정국, 완치 후 찾아온 후유증...끝나지 않은 '코로나 고통', SBS, 2020.9.4

문제사원으로 찍히거나 채용에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억압적 요소들은 노동자들이 현장의 제도 및 문제의 개선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노동자들끼리, 노동자와 관리자들 간의 소통을 단절시켜버렸다. 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안전과 생명을 지킬 권리'를 위해서는 다가올 위험에 대처하고 이를 바꿀 힘이 있어야 한다.<sup>11)</sup> 그 힘은 일터에서의 소통과 노동자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마련된다. 소통이 단절된 일터에서 더 많은 문제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쿠팡의 집단감염 사건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데 툭 잘못 올리면 찍히는거 알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거 잘못 얘기하면 찍히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찍히면 어떻게되요?) 어 뭐 최근에는 그러는데 일 신청하는거에서 잘린대요. 블랙리스트가 나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찍히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단톡방에서 웬 소리, 사측에 건의하는 예길 했더니 그 뒤로 그분도 단기였는가 본데 처음에는 아 그런가보다 했는데 계속 넣는데도 채용이 안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직 같은 분들은 3개월 계약인데 그 다음에 계약 안되고, 그래서 얘기 함부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어린 관리자가 ‘놀러왔냐’ 욕만 안했다 뿐이지. 그 많은 사람이 보는데에서 그 창피를 주는데 그 모멸감은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항의하면 바로 잘라버리고, 가라고 하니깐. 정말 그럴 때에는 내가 못 참겠다고 하고 싸우면, 그만둘 각오로 내가 먹살을 잡든지 하겠지.”

“관리자와 직원들 사이에 존중했으면 좋겠다. 일이 힘든 건 차치하고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필요한데 비인간적인 시스템, 체계, 분위기이다.”

물량 중심의 억압적인 운영방식과 소통이 부재한 현장의 문제점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변함없었고, 감염을 확산시킨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쿠팡은 감염병 상황이지만 방역수칙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소통 구조도 없었다. 감염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작업은 계속됐다. 물량을 우선하고 노동자의 건강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쿠팡의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이다. 결국, 쿠팡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일터에서의 감염이 노동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확산되었다.

11) 일터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인재이다. 2020.06.16. 오마이뉴스

하지만, 하지만, 쿠팡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위로 전화도 없었어요. 그게 더 괴씸해요. 이건 쿠팡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건데. 확진자가 나왔을 때 즉시 폐쇄했어야죠. 감염병 코로나에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쿠팡뿐이 아니라 코로나가 되면서 힘든 사람도 생겼지만,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잘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일이 잘되는, 생각 외에 그런 데도 많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쿠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날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같은 얘기예요. 열른 문을 닫고 직원들을 다 돌려보냈으면...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날 또 다음 날도 사람들 출근시키고. 거기서 많이 전염이 됐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보다 쿠팡 측에(서) 방역수칙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런 것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하물며 확진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 ③ 일터 복귀에 대한 두려움.

노동자들은 치료 이후 일터 복귀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일터에 대한 불안이었다. 이미, 미흡한 방역 조치와 안전대책 부재로 집단감염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때문에, 일터로 복귀한다면 다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또한, 주변의 시선 역시도 복귀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쿠팡과 통화했는데 거길 다닐 마음이 없고, 솔직히 다니기도 두렵다. 이삼십대라도 그런데 지금 50대인데 한번 더 걸렸다 그러면... 내가 코로나를 아는데 어떻게 거길 맘 편하게 다닐 수 있겠나 (동료들도) 뻔히 안다. 확진 안되거나 음성 나온 사람들은 진작부터 일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나가면 내가 확진자라는 걸 뻔히 안다. 그거 짹짹해서 내가 어떻게 다니겠나. 코로나에 또 안걸린다는 보장이 없다. 거기는 엄청 다중이 일하는 곳이다. 작업환경이 그렇다. 내 나이도 있다. 물론 65세 이상이 더 위험하다고 분류되지만 나도 50이 넘었는데 안전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코로나를 겪어봤는데 그걸 아는데 어떻게 맘 편히 그 직장 그것도 돈 몇

푼이나 번다고. 거기 다닌다고 한달에 기천만원 버는 것도 아니다.”

“제가 쿠팡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애길 안했어요. 쿠팡에서 다시 일할 자신도 없지만 엄마도 중증이라서 언니랑 번갈아가며 간병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일터에 대한 두려움은 쿠팡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었다. 안전대책이 부재했던 일터는 이미 일상적으로도 불안정한 공간이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관계 역시도 단절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쿠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가 감염의 책임으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

“(사건 이후) 퇴사할 사람은 퇴사하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특별히 단합이 되지 않아요.”

“저로 인해서 전염된, 옮겨진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괴로웠거든요. 거기서 그날만이라도 문을 섰다운 했으면 정말 그렇게 까지 (확진자가) 많이 나오진 않았을꺼라는 생각이 드는게 너무 안타까워요.”

일터라는 공간은 노동하는 이들이 서로 기대어 관계를 만들고, 협업하고, 삶을 일궈가는 시공간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안전하지 못했던 노동환경과 소통 없는 억압적 분위기, 그로 인한 집단감염이 동료들 간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일터를 더욱 불신하게 만들어버렸다.

#### **(4) 감염의 피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쿠팡에서 일어난 집단감염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감염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쿠팡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사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감염 이후 후유증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쓸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었다.

“일 못하고 앞으로 일하기 힘들고 어쨌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쿠팡 때문에 걸린 건데 보상은커녕 일언반구가 없다.”

“후유증이 좀 심해서 계속 병원을 다니는데 병원에서는 뚜렷하게 의학적으로 나타나는게 없거든요. 팔이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난게 아니라 근육통이 켈 심해요. 근데 이 근육통은 MRI까지 찍었는데도 이상은 없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약만 먹으면서 경과만 보고 있거든요. (일하시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근육통이 있으신가요) 저는 물류다 보니까 서서 일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지쪽, 무릎 밑으로가다 그래요. 조금만 서있어도 밤에가 켈 심하게, 누워있어도 통증이 계속 와서, 사실은 근무가 아예 힘든 상황이라서. 근데 그래도 저도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병원다니면서 약만 먹고 있거든요. 약을 먹으면 좀 통증이 나아져요. 근데 이게 솔직히 영구적일지 평생 약을 먹어야 할지 모르니까...”

감염은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가족으로 확대되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가족들의 몫이었다.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확진 되는 과정에서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을 돌보거나 간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이주일 간 그냥 아무 일도 못 하고, 저희 그 달에 세금 더 냈어요. 그냥 나라에서 지급한 최저 생계비 받고, 그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거보다 쿠팡 측에서 방역수칙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런 것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저 놀고, 남편 이렇게 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없는데, 병원비하고 간병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은 다 해결해줄 것처럼 말했지만. 진단서에도 정확하게 써있거든요. 주 코로나고, 부로 뇌 손상이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코로나가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격리해제 돼있어요. 이 사람은 거기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질병으로 확대된 가족의 치료비를 책임져야하는 조건에

놓인 노동자도 있었다. 일터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인한 결과였지만, 병원비를 책임지고, 생계를 돌봐야 하는 것은 쿠팡이 아닌 노동자 개인이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제일 피해가 심하거든요. 지금도 남편이 누워있고. 나라에서 해주는 건 코로나까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뇌 손상이 왔고, 코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원비도 다 제가 내고 있거든요. 저 놓고 남편 이렇게 되고, 돈 버는 사람이 없는데, 병원비하고 간병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고”

집단감염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정신적인 위기와 더불어 가족의 생계, 병원비, 치료비 문제 등 경제적 위기까지 동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일터의 건강권과 안전의 문제가 노동자 개인에게 한정된 사안이 아니라 가족, 지역 등으로 확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일터의 노동환경과 안전의 문제는 공동체의 안전·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터의 건강권과 노동환경, 안전에서 사업주의 책임이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 2) 관계와 일상의 변화, 사회적 낙인들

### (1)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하게 된 사회적 차별

지난 7월 ‘코로나19 6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확진될 경우 그 이유로 비난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8.1%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1.2%는 확진자가 감염을 스스로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으며, 감염 책임이 환자 개인에게 있다는 답변은 35.5%, 감염은 그 환자의 잘못이라는 응답은 26.5%로 조사됐다.<sup>12)</sup> 통계를 통해, 코로나19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감염된 이들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졌다. 쿠팡의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 역시도 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있었다.

---

12) 유수인, 확진자 낙인 “코로나 보다 더 무서워...”, 국민일보, 2020.7.13



“같이 사는 두 명의 친동생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언니의 확진 사실을 알리니 회사가 쉬고 따돌림이 있었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몸에 바이러스 남아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들었어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은 노동자들의 일상으로 밀접하게 다가왔다. 자주 오가는 단골 식당에서 부천신선센터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여기 오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는 조심스런 당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아파트 등 주변 이웃들의 시선 역시도 위축되게 만들었다. 결국, 한 노동자는 엘리베이터를 눌렀을 때 바라보는 시선이 의식되어 현재도 계단으로 걸어 다니고 있다.

“제가 아파트 꼭대기 19층 살아요. 나 확진 받고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방역하는 사람이 이거(방호복) 다 뒤집어쓰고 2명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들어와갖고 뿌려댔어요. 그러는 아파트 사람들 다 알지.”

“엘리베이터에서 19층을 누르면 바라보는 시선에 위축이 돼요.”

사회적인 차별과 낙인은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노동자의 확진은 지역사회로 알려졌고,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다. 부모와 아이의 가족 간 감염 여부에 지역사회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그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과 상처를 경험했다.

“확진된 날 그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확진된 전화를 받고 1시간도 안 되었는데 (막내가 다니는) 학원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맘카페 분들이 빨리 정보를 얻고 학원에 얘기를 하셨나 봐요. 애가 그 학원에 다니냐 얘기를 하시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보다 나로 인해서 내 애가... 진짜 우리 애가 음성 나왔으니 망정이지 양성 나왔으면 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 자가격리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가족들이 감내해야 되는. 다들 말로는 제 잘못 아니라고 해요. 그치만 주위에서 보는 시선은 그냥 감염병자. 가족들도 많이 상처받았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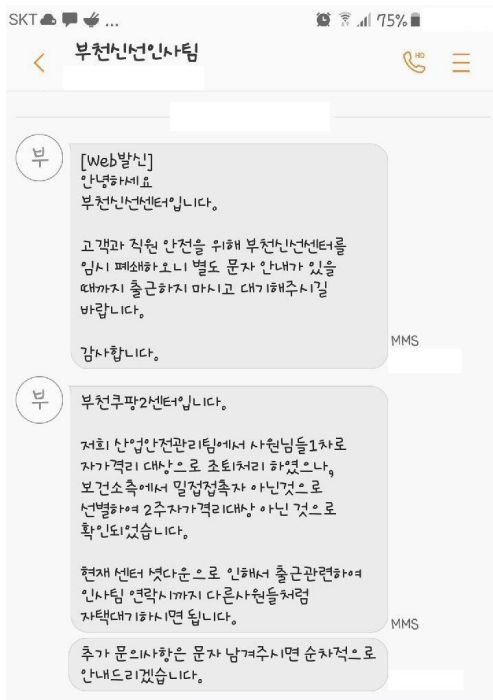
“내가 그지 같은 곳에 벌어먹자고 나가서 애까지... 만약에 확진이라도 나면 어린이야 그렇다 치고 애들에게 미안한 일이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하고, 치료 받는 과정도 장난이 아니고, 완치가 되도 폐도 그렇고 맛이 갔다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미안해지는 거다.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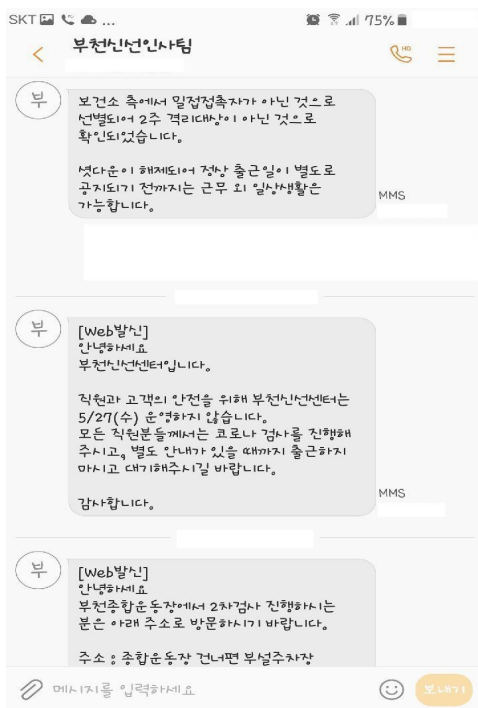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던 노동자는 검사 시작 전부터 쿠팡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부천 신선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쿠팡의 느장 대처로 인해 지역의료체계의 대응 역시 뒤늦을 수밖에 없었다. 가족과 주변으로의 감염 여부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느장 대처는 답답한 상황을 가중시켰다.

“(25일) 보건소에서 하는 말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고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했다. 84통인가를 했다. 85번째에 통화가 됐다. 짜증을 냈다. 코로나데 난 집에 애들이 있다, 빨리 검사를 시켜줘라. 그랬더니 성함하고 연락처를 남겨달라. 공문이 안 내려왔다고. 확인하고 전화를 다시 주겠다고. 그런데 전화가 안 왔다. 그래서 부천시 보건소에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자기네도 공문이 안 내려왔다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확진자도 몇 명 나왔다고 하는데 왜 공문이 안 내려오냐고 따졌다. 어디다 전화를 해야 하나, 답답하다고 했더니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 전화가 없었다. 기다렸다가 그다음 날 부평구에 전화를 했더니 검사받으시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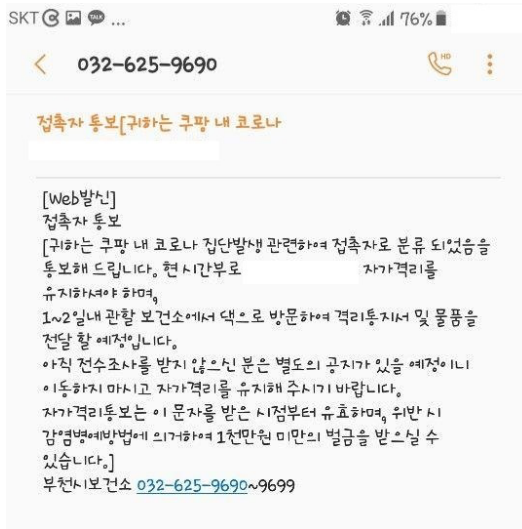
쿠팡 집단감염,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그림IV-1> 부천신선센터에서 온 알림 문자.  
2주 자가격리 대상 아닌 것으로 확인. 출근 관련 다른 사원들처럼 자택 대기하면 된다는 문자.



<그림IV-2> 같은 날 부천신선센터에서 온 알림 문자.  
밀접접촉자가 아니니 2주 격리대상이 아니다, 셋다운 해제로 정상 출근일 공지 전까지 근무 외 일상생활 가능하다는 문자.



<그림IV-3> 이를 뒤에야 부천시 보건서에서 온 알림 문자  
부천시 보건서에서 접촉자 통보. 0월 0일 0시까지 자가격리 통보하는 문자

한 노동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족이 차별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노동자 검사 과정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려없이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라는 이유는 무조건적 차단 대상이 되었다. 대처 과정에서 노동자와 가족들은 고립감과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교장이 친구들 보는 데서 (교실에서) 빨리 나오라고 했다고. 보건실에다가 가뒤투고 창문을 열라고 했다고. 보건실 선생님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문을 쾅 닫고 거기 꼼짝 말고 있으라고... 확진 나온 거 아니라고 하고 일단 집으로 와야 된다고 했더니. 전화 걸어서 택시 태워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1시간이 넘어도 애가 안 왔다. 학교에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 엄마가 확진 받을 수도 있으니 택시론 안 된다고. 그래서 119라도 불러서 애를 태워 보내라. 내가 데리러 못 간다 그랬더니. 119에 연락을 하니 애가 아픈 것도 아니고, 엄마가 확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라고 (119차를) 못 보내준다고 한 거다.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된 거다.”

“급식시간인데 애한테 밥도 안 주고 거기다 그대로 가뒤투어야 되겠는지... 잠도 한숨도 못 자고 두통약 주워 먹고. 근데 큰 애가 집에 왔다. 오고 나니까 학교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다. (초등생) 아들 다니는 보건실에서도 전화 오고. 확진자도 아닌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미 확진자가 된 거였다... 나도 피해잔데 이

거는 추잡스러워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 (2) 감염 이후, 노동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대한 불안감은 쿠팡 이후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감염인을 향한 사회적인 차별<sup>13)</sup>과 편견이 일상과 일터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감염 이후, 또 다른 노동을 지속하거나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감염 사실이 알려질까’라는 두려움과,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일한 경력이 또 다른 차별로 다가 올 것에 대한 우려였다.

“코로나 확진된 거 자체가 제일 힘든거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전과니까.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나는 보건 전과자고 가족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평생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한다. 이게 2~3년 후에 말끔하게 감기나 조금 심한 독감처럼 인식이 되지 않은 이상 그렇다. (취업이 안되는 경우도) 부천센터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면(확진자가 아니었는데도) 거기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일할 사람 많은데 짹짹한 사람 받겠나. 그거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 널려있는데.”

## 3) 소결

쿠팡노동자인권실태조사단은 노동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쿠팡이 방역에 얼마나 부실했는지, 안전대책 없는 일터인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집단감염이 가족에게로 확산되면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확인했다. 집단감염 사건은 단기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물량과 속도 중심, 노동자들과 소통을 단절한 쿠팡의 경영 방식이 만들어 낸 구조적 참사였다. 하지만, 감염-치료-완치 이후의 재발방지대책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쿠팡은 여전히 사과도 없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13) 코로나19에 걸렸다...“나도 피해자”라고 말하긴 쉽지 않았다. 2020.7.27. 경향신문

코로나19 상황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잠시 멈춤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두가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 맺고 살아왔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긴급한 시기 우리의 삶을 유지 시켜주었던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는 택배 노동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적극적인 봉쇄 없이 거리 두기 등이 가능했던 것은 택배 노동자들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쿠팡에서 일어난 집단감염 사건은 단지 노동자들만이 겪었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를 연결시키는 필수노동의 문제이기에 우리 모두와 무관하지 않다. 쿠팡의 문제에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 19 시대, 비대면이 서로의 존재를 가리고 있지만, 그 너머의 사람을 확인하는 것, 그들의 노동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

## 2.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쿠팡의 대응

### 1) 금전적 대응

#### (1) 부천신선센터 노동자들의 기존 급여수준

부천신선센터 FC파트 노동자들의 2020년 시급은 다음과 같다.

	DAY		DAY(QC)		SWING		SWING(QC)	
	12개월 까지	13개월 이상	12개월 까지	13개월 이상	12개월 까지	13개월 이상	12개월 까지	13개월 이상
계약직	9,790원	10,030원	10,270원	10,510원	9,640원	9,840원	10,070원	10,270원
일용직	9,020원				9,020원			

<표IV-1> 부천신선센터 FC파트 노동자들의 2020년 시급표

위와 같은 시급으로 노동자들의 급여를 산정해보면,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주 5일 근무에 1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월의 기본급은 2,014,760원 ~ 2,196,590원이고(근무조,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다름),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1일의 기본급이 72,150원이다.

기본급에 더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부천신선센터의 근무조별 연장/야간근무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오후조와 심야조의 경우 근무시간 자체에 야간이 포함되어 있어 야간수당이 반드시 지급된다. 오전조와 오후조에서 진행되는 연장근무(매우 빈번히 실시됨)의 경우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되지만, 잔업이 있는 날에는 잔업이 끝나는 시간에 셔틀버스가 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연장근무를 수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오전조 (08시~17시)	O	X
오후조 (17시~익일 02시)	O	O
심야조 (23시~익일 08시)	X	O

<표IV-2> 부천신선센터의 근무조별 연장/야간근무

따라서 부천신선센터의 노동자들은 기본급에 비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계약직 노동자들은 보통 한 달에 세전 230~250만 원가량을 지급받는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에 주휴수당<sup>14)</sup>까지 붙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만 원가량을 지급받는다.

## (2) 집단감염 사태 당시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 실태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답변이 부정확하여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는 임금의 개념과 계산이 복잡한 데서 오는 혼동으로 보인다. 쿠팡의 공식적인 임금 관련 공지(문자)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증언을 재구성해보면 부천신선센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아래와 같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계약직	
확진자	비확진자
-5. 25. ~ 26. : 평균임금 70%	-5. 25. ~ 26. : 평균임금 70%
-입원기간(통상 5. 27. ~ 6. 27. 정도) : 평균임금 100%	-자가격리 기간 (보건당국의 개별 통보에 따르지만 통상적으로 2주) : 통상임금 100%
-퇴원 이후 약 30일간 부여된 휴업기간 : 평균임금 100%	-자가격리 해제 이후 센터 재가동까지의 휴업(셋다운)기간 : 평균임금 70%
일용직 (확진 여부 불문)	
자가격리 2주 동안의 위로금 격으로 100만 원씩 지급받음 (그 외의 서비스나 보상 없음)	

<표IV-3> 집단감염 사태 당시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

(확진자)“병원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불한 것이고, 병원 치료 기간에 급여 100%, 한 달 더 쉬었다가 나오라고 하는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약속받은 상황...”

(비확진자)“중간에 문자를 받아서 월급 수령 가부를 알게 되었다. 격리 2주 동안은

14) 일용직 노동자들도 주 2회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100프로고, 그 이후는 70%만 받았다.”

### (3) 집단감염 사태 당시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 문제점

사용자가 사업장을 휴업할 경우 노동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sup>15)</sup>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휴업에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①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 7. 급여 지급의 문제점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수당) 지급은 겉으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다시 따져본다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터에서 사용자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부천신선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쿠팡 측이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며, 이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중에 사용자는 민법 제 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전액(평균 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 측은 5. 25. ~ 26.의 기간 및 ‘비확진자’의 자가격리 해제 이후 센터 재가동까지의 휴업(셋다운) 기간에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만을 지급하였고, 비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에는 통상임금만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특히 비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 2주의 기간에는 평소와 같이 일했더라면

---

15)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받을 수 있었던 돈 대신 각종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 수준의 임금(통상임금)만을 받았고, 이후의 휴업기간에는 평소에 받던 임금(평균임금)의 70%밖에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설령 집단감염 사태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쿠팡 측이 스스로 판단하여 비확진자들에게 민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휴업의 원인은 똑같은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달리 취급한 것은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 ㄴ.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책은 내놓지 않음

나아가 쿠팡은 확진자 및 비확진자에 대한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라서 문제이다. 피해 노동자의 입장에서 수당과 경제적 보상은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인데, 저임금 노동자인 이들에게 기존에 받던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확진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상응하는 보상을 했어야만 한다. 방역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킨 상황에서 막대한 이윤을 거두어들였으면서도 쿠팡은 법률상 기준에 맞춘(사실상 법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 지급 외에 피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고, 결국 감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다.

#### ②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보상도 문제였다. 부천시선센터의 섣다운 이후, 쿠팡 측은 당시 근무했던 단기 일용직 직원들에게 자가격리 기간(2주)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쿠팡은 이를 아주 당당하게 '쿠팡 뉴스룸'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쿠팡은 코로나 사태로 자가격리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혹은 휴업수당을 통해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고, 법률이나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 **단기직(일용직) 직원 2,600여 명에게 국내 최초로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분들에게 장기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것을 다시 한번 권장하는 등 고용 창출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림IV-4> 쿠팡 뉴스룸 “부천 신선물류센터와 관련된 오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 6. 18.)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하루에 받는 실질적인 임금이 보통 10만 원 언저리였음을 고려하면, 2주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원래 1주에 5일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자가격리가 안되고, 그 기간에 쿠팡이 아닌 다른 곳에 일했다면, 노동자는 100만 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벌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해당 위로금은 모든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것도 아니었다.

“부천 쿠팡에서 ... (일용직)사원들에게 100만 원 보상금 격으로 입금했다. 그나마도 못 받은 사람들도 있다...”

쿠팡의 이러한 위로금 지급은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했어야 할 임금 수준일 뿐이다. 인터뷰에 응한 노동자들은 감염 사태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놓으려는 의도일 것이라 추측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동거하는 가족들까지 격리되어 모두 생업이 중단된 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쿠팡 측의 위로금 1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손해도 많거든요... 2주간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나라에서 지급한 최저 생계비 받고, 그게 억울한 거예요. ... 사과 한 마디 없잖아요.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 제가 100만 원 얻었을 때에도 그 문자를 보냈어요. 사측에서 이런 거 해줘서 감사하다. (중략) 일절 답 없어요. 그런 게 되게 무시당한 것 같고”-

“(중략) 개네들이 한 거는 돈 100만 원 씩, (일용직)자가격리자들한테 돈 100만 원

씩 뿌린 거? 네. 진짜 기분 나빠요. ... 그걸로 사회 여론 무마시키려고 잠재우려고 했다는(생각이 든다) ... 개네가 한 조치는 그런 거밖에 안보여요.”

게다가 쿠팡은 뉴스룸을 통해 '고용창출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다. 이전에 일용직 노동자들은 센터를 교차해서 근무할 수 있었는데, 집단감염 사태 이후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다른 신선센터를 교차해서 나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안 그래도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의 벌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기사원 경우 교차근무(일주일에 5일 근무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2일은 6센터, 3일은 4센터에 나오는)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 센터에만 갈 수 있게 해 놨다. 홈FC 정책이 있기 때문에 부천 쿠팡에 근무한 단기사원들은 다 리스크가 있다. 타 센터에 다 반려당하고 있을 거다.”

### ③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급여 초과지급

더욱 심각한 것은 물밑 금전 보상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확인된 노동자 중 일부에 대해 6월 급여 지급 시 근거 없이 많은 금액이 휴업수당 명목으로 초과 지급되었는데, 대표적인 한 노동자는 직전 달인 5월 급여(2,349,690원)보다 6월에 약 200만 원이나 많은 임금(4,506,634원)을 지급받았다.

2020년 05월 급여명세서

[지급일 2020.06.10]			
성명	사번	부서	근무조
FC			
입수금액			2,349,680
지급내역		공제내역	
기본급	1,619,784	소득세	48,480
연장수당	231,360	주민세	4,840
임약수당	327,760	건강보험	86,130
휴업급여	203,746	건강보험장안	-21,470
		장기요양보험	8,820
		국민연금	85,500
		고용보험	20,660
합계	2,582,650	합계	232,960

※근태정보

연장시간	0	▲야시간	0
휴업연장시간	0	▲지시간	0

2020년 06월 급여명세서

[지급일 2020.07.10]			
성명	사번	부서	근무조
FC			
입수금액			4,306,834
지급내역		공제내역	
휴업급여	4,511,520	소득세	95,040
수급분	490,024	주민세	9,500
		건강보험	166,800
		장기요양보험	17,090
		국민연금	85,500
		고용보험	40,010
합계	5,001,544	합계	594,910

※근태정보

연장시간	0	▲야시간	0
휴업연장시간	0	▲지시간	0

<그림IV-5> 5월에 비해 6월분 급여가 200만 원 가량 초과 지급된 한 노동자의 급여명세서

이에 노동자들이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과 반환계좌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회피했다. HR담당자는 모든 확진자 사원에게 공통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는 답변만 남기고 반환에 대해서는 일절 안내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급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당 초과 지급분은 피해를 크게 입었거나 회사의 책임을 촉구하는 데 목소리를 내는 일부 인원들에게만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지급된 금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00만 원을 초과 지급받은 이 노동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딸이 취업에서 탈락하고,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황이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와 남편 몫으로 100만 원씩 꽃아 준 것인지, 무슨 명목인지 알 수가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불쾌하다고 말했다<sup>16)</sup>.

16) 강예슬, 「[‘아이와 남편 몫 100만원씩 꽃았나’ 코로나19 가족확진 노동자 두 번 올린 쿠팡], 『매일노동뉴스』, 2020.07.13.

## 2) 치료·회복을 위한 지원

### (1) 실효성 없는 간접지원 : 긴급돌봄서비스

현실적인 보상 대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돌봄서비스'와 같은 실효성 없는 간접지원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쿠팡 측이 제시한 '긴급돌봄서비스'란 자가격리 기간 중인 노동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 우편물 수령, 공과금 처리, 은행업무, 애완견 돌봄, 집안 청소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가족이 모두 감염되어 입원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이 '긴급돌봄서비스'는 무의미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전화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게 돌봄서비스였다 ... 우리는 세 식구가 전부 확진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하고 끊었다. 그게 전부다. 회사에서 해준다고 말한 게.”-규진현아0722

“한 번 문자가 와서 무슨 ... 서비스를 해준대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제가 좀 살짝 기가 막혀서, 기분 나빠서, ... 저를 (확진자인데) 자가격리자로 알고,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해준다 ... 서비스 신청 한 적은 없어요. 그 연락밖에 받은 게 없어요.”-안창규0722

“입원했을 때 우편물이나 공과금 이런 것들을 대신해준다는 연락은 받았고 그 외에는 없었어요. 휴업급여 주고, 당시의 사람들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어요. 일한 게 얼마 안 되어서 확진되었고 7월 25일부터 출근했는데 요즘 특방 보면 많이들 걱정하고 그런 분위기죠.”-김한별0907

### (2) 치료·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재

일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 노동자가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사측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피해 노동자와 확진된 가족들에 대한 쿠팡 측의 실질적인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쿠팡의 대다수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여 있다. 집단감염

사건 이전에도 쿠팡의 노동자들은 야간노동,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손목터널 증후군, 목디스크 등의 질병에 시달려왔다. 증언에 따르면 병가가 도입되어 있어도 이를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지내온 노동자들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면 쉰다’라는 당연한 수칙은 쿠팡의 노동자들에게는 먼 이야기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사례들이 최근 알려지고 있다. 쿠팡 역시 확진된 노동자들이 완치되어 퇴원했다라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쿠팡과 같은 사업주들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한 대안 마련과 트라우마 극복, 노동자 개인별 심리상태를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위로 전화도 없었다. 그게 더 괴심하다.”

### 3)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일관성 없는 조치

#### (1) 일관성이 없거나 불통으로 일관한 쿠팡의 소통 방법

치료 지원 및 보상 문제에 대한 쿠팡 측의 안내에도 일관성이 없었다. 집단감염 발생 이후 조속히 대처했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회사 내 소통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지침도 부재했다는 걸 보여준다. 5. 27.에 확진 판정을 받아 바로 입원하고, 한 달 뒤인 6. 26.에 퇴원한 노동자는 치료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은 것 외에 쿠팡 측에서 받은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은커녕 위로의 연락조차도 없었던 것은 회사에서 보상과 사과의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일 거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다른 노동자는 확진 판정 이후 본사 지원팀에서 3일 정도 매일 전화해서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연락이 온 이후 임금 지급에 대한 단체문자로 된 공지 외에는 조치가 없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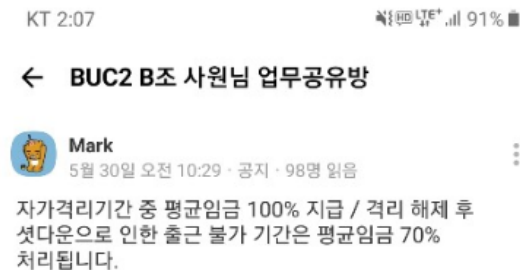
“본사 지원팀 아무개가 확진 이후 3일 정도는 매일 전화해서 필요한 거 없는지,

위로의 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말하고 문자, 전화가 전혀 없었다. 입원 중간에 전체 문자로 임금관련해서 연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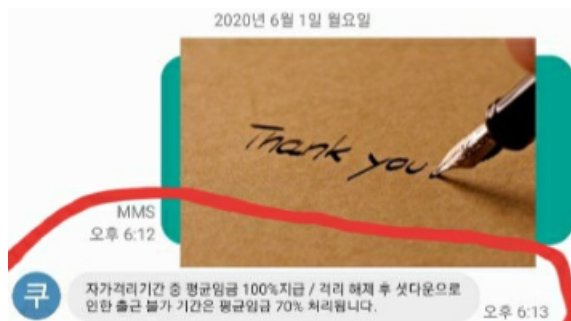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회사의 연락은 없었다. 처음 확진 받았을 때 양식에 맞게 보고를 해달라 해서 보냈고, 음성판정 이후로 30일이 지나는 7. 30.부터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게 전부다.”

## (2)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돈 문제’에서조차 일방통행

급여 지급에 대한 공지도 쉽게 말이 바뀌었다. 쿠팡은 5. 30.에 업무공유방 공지를 통해, 6. 1.에는 문자를 통해 비확진자의 격리기간(약 2주)에 평균임금의 100%가 지급된다고 두 차례나 공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균임금의 100%보다 못 미치는 액수가 지급되었고, 이에 노동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6. 14.에는 문자를 통해 자가 격리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으로 갑작스럽게 말을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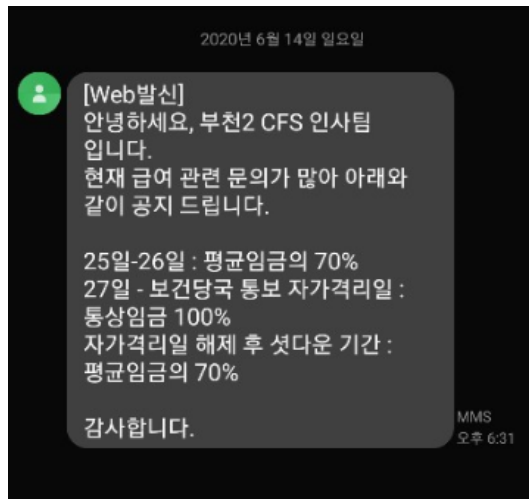


<그림IV-6> 5. 30. 업무공유방 공지 : 자가격리 기간 중 평균임금 100% 지급을 약속



<그림IV-7> 6. 1. 문자 공지 : 자가격리 기간 중 평균임금 100% 지급 재차 약속





<그림IV-8> 6. 14. 문자 공지 : 자가격리일 통상임금 100% 지급으로 갑자기 말을 바꿈

#### 4) 소결

이번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서의 쿠팡의 대응을 보면 이 거대 기업이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의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보인다. 쿠팡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이고 '아플 때 쉬고 싶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것이 곧 해고(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들을 보면 쿠팡의 집단감염은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무권리 상황의 안전하지 못한 일터가 만들어낸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보건 재난 상황에서는 국가의 지원체계와 안정적 행정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충분치 못하다면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감염 사태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기업의 몫이다. 쿠팡 역시 집단감염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로 인해 2차 감염된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보상, 치료와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쿠팡은 자신들의 책임을 무마하기에만 급급했을 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사태로 쿠팡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2차 감염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적 혼란까지 야기시

켰다. 쿠팡에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이다.

### 3. 쿠팡풀필먼트 목천센터 조리원 사망사건에 주목한다.

#### 1) 쿠팡물류센터 식당조리노동자는 어떻게 사망했나

##### (1)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상황

2020년 6월 1일(월)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쿠팡(주) 풀필먼트 목천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일하던 30대 A씨는 점심 배식을 마치고 대걸레질을 하던 도중 쓰러졌다. A씨 외에도 60대 노동자 2명도 쓰러져, 119가 출동하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A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A씨는 협력업체인 동원홈푸드를 통해 쿠팡 천안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파견노동자였다. 동원홈푸드는 쿠팡으로부터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주)아람인테크’라는 파견업체 노동자로,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담당하는 조리보조원이다. 그가 맡은 업무는 ‘조리보조업무’와 ‘청소업무’였다. 락스와 오븐크리너 등 독성이 강한 약품을 몇 개 섞어서 수백 명이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약 200석 규모의 홀(약 60평)과 주방(약 20~30평)의 바닥과 테이블, 의자 등을 닦았다고 한다.

##### (2) 쿠팡 측의 조치

사건 발생 후, 쿠팡은 식당은 위탁사업이므로 책임이 동원홈푸드에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 사망 관련하여 사과도 하지 않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회사는 사망에 대해 고인의 과실이라며 유족들을 모욕했다.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고, 관련 소식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둘째, 용역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식당운영을 중단하는 등 사망 발생 경위를 조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직원들의 식사를 도시락 배급으로 대체하면서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라진 것이다. 식당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

했는지 작업환경을 측정하거나,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다른 조리원들의 피해 확인이 어려워졌다. 셋째, 역학조사 방해와 유족(대리인) 참여 배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식당에서 락스와 세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독성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앞두고 현장조사를 했다. 그런데 회사는 원래 사용하던 성분이 아닌 물질을 역학조사관에게 제시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예비조사 당시, 회사는 '락스'와 '오븐크리너' 등의 배합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재현한 것이다. 이후 측정조사에서도 회사는 과거 고인이 실제 사용했던 '오븐크리너'가 아닌 종류가 다른 '오븐크리너'를 역학조사관에게 제시했다.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에 과거 고인이 실제 사용했던 '오븐크리너'로 측정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했다.

또한, 쿠팡은 현장조사 당시 사측 관계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족만 현장에 들어가게 했고 유족 대리인인 노무사의 참여는 거부했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동료의 진술과 더불어 작업환경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줄 수 있는 대리인(노무사)이 참여해야 현장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출입방해로 대리인 노무사는 참여하지 못했다. 게다가 시연을 한 사람은 영양사로 고인과 동일 작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 지시를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신뢰와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항의 끝에 결국 사측과 유족 대리인도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장조사가 진행돼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고인의 유족과 노무사, 지역의 활동가들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회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 2) 쿠팡은 조리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해쳤나

평소 A씨의 고충을 들어왔던 유족과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7)</sup>

---

17) 이는 산재사건을 대리하는 노무사의 진술과 고소장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 (1) 인력충원 없는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과로 가능성

코로나19로 물류센터의 물량이 많아지면서 구내식당 이용자도 늘어났다. 검수·집품·포장·분류·상차 등 모든 공정에서 개인별 시간당 생산량(UPH) 기준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식당 노동자들의 조리 관련 업무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밥을 먹는 노동자의 인원도 증가했고, 그에 맞춰 구내식당도 확장공사 했다. 약 200석이던 식당을 250석으로 늘렸고, 일간 식당 사용 인원이 약 380명 이상 늘어났다. 배식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식자재를 정리하고 조리할 음식이 늘어나고 배식 횟수도 증가하는 등 식당 노동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했으나 인력충원은 하지 않았다.

“배식시간도 2회(11시20분, 12시)에서 3회(11시 20분, 12시, 12시 30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시쯤 끝나는 배식이 2시쯤 끝났습니다. 배식 이후 바닥청소 등 업무시간도 그만큼 지연되었고 1시 30분이던 점심시간도 2시 이후로 지연되었고 3시였던 퇴근 시간도 30-40분은 기본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매주 대청소하는 날은 퇴근 시간이 더 지연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이 늘어나서 퇴근시간을 30-40분 넘겨 일하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근시간도 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

다. 점장(영양사)이 알아서 근태를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안 되겠다고 퇴근시간을 적어놔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과 식당 확장공사로 청소업무도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 주 1회 실시하던 청소업무가 매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식당이 커져서 바닥면적, 테이블, 의자 등이 많아지면서 청소업무량 증가했으나 이와 관련해서 인력충원을 하지 않았다. 고인을 포함한 조리 보조원 3명(고인, 60대 2명)이 교대로 청소를 했고, 주 1회 대청소를 추가로 실시했다. 남편에게 ‘조리를 하러 온 건지, 청소를 하러 온 건지, 헛갈릴 정도로 청소업무를 많이 해서 힘들다’고 호소한 적이 많다고 한다.

“고인은 배식시간에 잠깐 훔 세팅과 배식 식판운반 등을 담당한 것 말고는 하루 종일 혼자 청소를 했는데 **영양사(영양사는 동원홈푸드 점장)가 수시로 와서 청소와 소독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업무가 증가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아

프고 목소리도 나빠지고 눈 혈관도 너무 자주 터지고 어지럽고 두통도 심했습니다. 함께 일한 69세의 조리보조원은 코피가 자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6월 1일에도 과중한 업무는 계속됐다. 아침, 점심 배식을 마치고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잠깐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을 해야 했다. 이후, 찬모가 준 약(부검감정서상 ‘타이레놀’로 추정됨)을 먹고 다시 밀대 걸레로 급식실 바닥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됐다. 아프면 쉬 수 있는 노동환경(인원이나 업무 분위기)이었다면, A씨는 퇴근해서 병원에 갈 수 있었을 것이고,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배식과 1차 마무리 작업을 마친 후 홀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 근처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앉았는데 고인이 배가 고프다면서 식판에 밥을 많이 담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나 이상해 왜 이러지?”라며 가슴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고 오한이 나고 춥다면서 식판은 그대론 둔 채 에어컨이 없는 곳으로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고인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밥을 못 먹을 것 같다고 식사는 하지 않았고 10분 정도 쉬면서 영영사에게 ‘청소 좀 덜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쉬는 시간 만들기로 하지 않았나요?’라고 말했습니다. 10분 정도 쉰 뒤 고인은 다시 바닥청소를 시작했습니다.”

## (2) 권리 없는 방역대책, 청소 약품의 과다사용 및 혼합사용

현재 A씨의 건강을 해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 중 하나는 청소할 때 사용했던 방역품의 화학물질이다. A씨는 일하는 동안 청소 방역을 하는 물질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쿠팡은 조리 노동자들에게 락스와 세제 등을 혼합하여 바닥청소 등을 하라고 지시했으나 함유하고 있는 유해성분과 물질 배합 시 어떤 성분이 생성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다. 심지어 회사는 락스 등을 적정비율에 맞게 물에 희석하기 위해 계량컵을 지급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도 거절했다. 그리고 독성이 강한 락스와 세제의 혼합사용 및 음식 조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조시설이 부재했고, 개인 보호 장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루에 2번 락스와 오븐크리너로 바닥청소를 하면 하루 종일 약품냄새가 진동하

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특히 오븐크리너가 계면활성제 성분이라 독성이 강해서 들통에 부을 때 잘 못 붓거나 말통을 놓치면 얼굴에 튈 수 있어서 위험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오븐크리너가 튀어서 피부가 타서 흉터가 생겼습니다. 눈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한 오븐크리너를 왜 이리 많이 사용하나, 계량컵이라도 좀 달라고 몇 차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니다.**

“고인이 청소할 때 집에서 쓰는 락스와는 차원이 다른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 경험하는 냄새가 났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눈이 따갑고 아플 정도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락스 성분과 소독제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한다고 한다. 락스의 대표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 계면활성제와 향료 등 알코올 성분과 반응할 경우 클로로포름이 생성될 수 있다. 알려졌으나, 클로로포름은 고농도 노출시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 또는 마취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청소 및 소독을 할 경우, 충분히 환기하고 휴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 식당 조리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다.

실제 천안노동부의 성분분석 결과, 고인이 사용한 청소약품(희석액)에서 심장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고, 만성노출 시 심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클로로포름’이 검출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외에도 A씨는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흡 및 유해가스(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에 약 1년간 지속적·누적적·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유족과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부천물류센터 코로나 집단감염사태 이후 소독제가 독해져 힘들어했다고 한다. 집단감염에 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려면 그에 따른 필요인원을 총원하거나 안전한 방역물품 등을 준비하는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인력도 총원하지 않고 안전한 방역작업 방식도 마련하지 않은 채 소독과 청소를 맡기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일 뿐이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20.5.2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4편) 붙임7로 배포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코로나19는 새로운 바이러스로서 소독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본 지침의 내용은 유사한 형태의 코로나바이러스(사스(SARS) 및 메르스(MERS) 등)에 효과적인 소독제의 유효성분 및 함량 등을 바탕으로 제시된 자료이며 등 세부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기간에 한하여 유효하게 적용되는 지침임

**1. 살균·소독제 사용 전 주의사항**

- 제품의 유효성분을 미리 확인하고 **성분별 유효농도(표 1)**에 맞게 사용할 것
- **유효성분의 유해성(표 4)을 확인하고, 특히 제품별로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사용할 것**
- 희석이 필요한 경우 눈, 코, 입, 피부 등 인체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이하 「소독 안내」)의 「II.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직전에 희석할 것
- 환자가 이용하는 공간의 살균·소독의 경우 「소독 안내」의 「III.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방법」 및 붙임 4의 환자가 거주한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을 준수하고, 일상적인 지역사회 소독은 「IV. 일상 청소·소독 방법」을 따를 것
- **다른 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 것.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할 것**
- 제품 사용 시 피부와 눈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할 것. 보호장비를 갖춘 것.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할 것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 ①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 \*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②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 준비**
  - \* 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 ③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참조(붙임 8)**



- \*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하고, 농도별 표면 접촉 시간은 5페이지 참조
- \* 암모니아 또는 다른 소독제와 혼합 금지
- ④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에 적용하지 않음
  -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분사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하여 적신 후 표면을 닦음
- ⑤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에 유의할 것(붙임 7, 8)
- 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 ⑦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며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
- ⑧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 3-4판), 2020.8.20.

### (3) 안전교육, 안전장비 등 안전대책 외면

A씨를 비롯한 조리보조원들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쿠팡이 동원홈푸드에게 위탁을 맡겼을지라도 도급인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씨가 (주)아람인테크라는 파견업체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쿠팡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적정배합에 대한 기준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답을 하지 않았던 동원홈푸드의 책임도 크다. 만약 중대본에서 내린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을 했다면, 노동자들도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 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이 크다.

“작업복도 지급하지 않아서 각자 사복을 입고 일했습니다. 회사는 긴 앞치마, 고무장갑, 장화, 음식에 침이 튀지 않도록 투명마스크를 지급했습니다. 작업복은 원래 지급하지 않다가 언젠가 하얀색 상의만 1번 지급했고 고무장갑 안에 끼는 면장갑

은 늘 부족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뒤에는 투명마스크 대신 주름진 부직포마스크 같은 걸 지급하면서 밥 먹을 때 빼고는 절대 벗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텍스 장갑도 지급하지 않아서 각자 자비로 구입했고 부족한 면장갑도 각자 자비로 구입해서 썼습니다.”

“작업복 하의, 전처리나 음식조리할 때 착용하는 라텍스장갑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쿠팡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그때서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동료와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기본적인 청소작업 도구와 보호장구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한다.<sup>18)</sup> A 씨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은 쿠팡과 동원홈푸드, 파견업체 모두에게 있다.

#### (4) 간접고용으로 안전의무 회피, 누구도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아

현재 노동자의 사망사건에 대해 쿠팡과, 동원홈푸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역학조사 등을 위해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계약해지를 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안전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중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파견노동자는 안전사고가 나면 위탁계약 종단을 하거나 원청사용주가 위탁업체에 책임을 넘기기 쉬워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사건은 다단계 간접 고용형태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무책임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 3) 정부의 소극적 조치의 문제점

#### (1) 조리(식당, 청소)노동자의 안전과 관련한 조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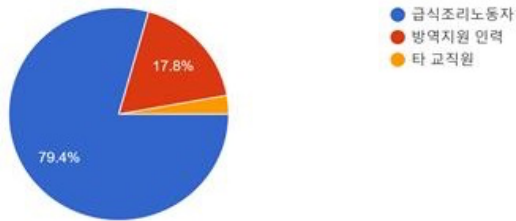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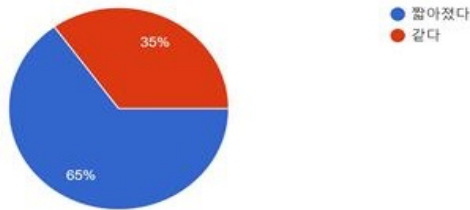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에도 조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침 부재 등 대책은 거의 없었다.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 노동자들은 대부분 적은 인원과 과다 업무, 조리나

18) 전지선, 「동원홈푸드, 쿠팡 물류센터 사망사건에 '묵묵부답' 일관」, 공감신문, 2020.6.17. <http://gokorea.kr/685690>,

청소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화상 등) 등 산재사고가 많다.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업무를 조리노동자 개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어 노동강도 강화와 화학 물질 노출의 위험이 커졌다.

실제 최근 학교에서 일하던 급식노동자가 쓰러진 적이 있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실시한 '학교급식실 코로나19 방역·폭염 상황 설문조사'에서 조리노동자의 건강이 위협 당하는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 의무가 급식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방식 외에 학교에서 취하는 조치가 없기에 발생하는 문제다. 설문결과를 보면 소독 업무를 급식조리 노동자들이 직접 한다는 응답이 79.4%, ③소독 업무로 인한 배식 시간이 평소보다 1.5~3배, 혹은 그 이상 길어졌다고 답한 응답이 79%나 나온다. 급식노동자들의 배식 업무시간이 평소에 견줘 1.5배 이상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78.5%에 이른다. '급식실 소독 업무를 방역전문 인력의 지원이 아닌 급식노동자들이 하는 경우가 79.3%에 이르러 업무 강도가 올라갔다고 응답했다. 그에 반해 휴식시간은 오히려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65.0%나 됐다.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환경이다. 더위 속 방역과 급식 조리 업무를 동시 수행하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조리 외에 소독 업무까지 추가되어 높아진 노동 강도였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학교의 경우지만 회사에서도 일하는 식당 노동자들이 겪는 환경도 비슷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방역으로 인한 조리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강화는 방역 책임을 사업주나 국가가 지기보다는 조리노동자 개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조리노동자들이 과로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위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휴식시간의 평년과 차이	응답수
짧아졌다	1,356
같다	729
<b>방역은 누가 하나</b>	<b>응답수</b>
급식조리노동자	1,655
방역지원 인력	371
타 교직원	59
<b>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은</b>	<b>응답수</b>
조리 업무 중 열기로 인한 더위	646
조리 업무에 소독 업무까지 해야하는 노동 강도	765
코로나19 예방 위한 모든 업무	567
코로나 감염 위험	107

<표IV-5>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급식조리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20. 06. 30

## (2) 다양한 직종별 위험도에 대한 실태파악 부재

쿠팡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든 아니든,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쿠팡물류센터에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물류센터에는 물건을 분류하고 이송하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있다. 대형 물류센터인 만큼 직종별(직무별) 위험도에 대한 실태 파악이 꼭 필요하다. 전체적인 물량 증가는 다른 직무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 예상 가능한 상황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2011년부터 서비스 직종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했으나 실제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서비스직종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발행한 식당관련 종사자에 관한 안전 가이드를 보면, 레스토랑에서의 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 안전사고예방에 필요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의 냉장고안전, 튀김요리안전, 고열오븐안전등 구체적인 예방사례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노동자도 사용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구 비상 세척제 등을 사용할 경우,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보호장비를 착용 해야한다. 노동자들은 그리스와 표백제 등과 같은 부식을 일으키는 화학 약품을 다루게 된다. 눈이 노출된 경우에 그들의 눈이 붉어지는 것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되는 화학 물질에 따라, 레스토랑은 필요한 비상 눈 세척제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특정 요구사항에 사용되는 화학 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호 장갑 규정을 두어 화학 약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장갑의 종류와 다루고 있는 화학 약품이 적합한지를 반드시 공급업체와 함께 점검해보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9)</sup>

---

19) 조흥학,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8쪽

V Do

X D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뜨거운 장비와 증기에 대해서 인지해야 한다.</li> <li>✓ 얼지른 것은 즉시 닦아 낸다.</li> <li>✓ 적절한 방수가 되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는다.</li> <li>✓ 미끄럼 위험의 경고를 위해 표지판을 사용한다.</li> <li>✓ 청소용 화학 물질의 적절한 사용법과 위험을 안다.</li> <li>✓ 부식시키거나 자극적인 물질을 다룰 때 개인적인 보호 장비를 사용한다.</li> <li>✓ 모든 물질안전자료(MSDS)를 손쉽게 사용 가능 하도록 한다.</li> <li>✓ 비상 눈 세척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트나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다.</li> <li>✓ 섞일 수 없는 화학 물질을 혼합한다.(표백제와 암모니아와 같은)</li> <li>✓ 보호 장갑 없이 식기나 깨진 유리를 처리한다.</li> <li>✓ 보호 처리 없이 쓰레기를 제거한다.</li> <li>✓ 전원을 연결되었거나 가동 중인 기계(도넛 믹서 같은)를 청소한다.</li> <li>✓ 표기 되지 않은 세척용 병을 사용한다.</li> <li>✓ 전기 콘센트 그리고 가정용 기기와 액체가 닿게 둔다.</li> <li>✓ 큰 매트들을 도움 없이 수거한다.</li> </ul>
---	--

Windows 정품 인:

캘리포니아 식당노동자 안전가이드-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8 Section 3203

### (3) 고용형태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쿠팡 목천물류센터 조리노동자 사망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복잡한 고용 관계는 사용자의 안전책임을 분산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권은 쉽게 침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쿠팡처럼 다양한 고용 형태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고용형태별 위험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간접고용이나 계약직이나 일용직이 많으므로, 근로감독에는 고용 형태에 따른 위험도 조사와 평가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용형태별로 위험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유럽 OSH 지침에서도 청소노동자의 보호는 계약 관계가 중요하며 하도급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럽 수준에서, '직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개선을 장려하는 조치의 도입'이라는 기본지침과 그 하위 지침은 청소 분야에도 적용된다. 이 지침들의 규정은 각 회원국들의 국내법을 통해 제정된다. 건강과 안전이 고용계약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은 참고할 만하다. 하청 노동자가 많은 청소 분야의 경우, 다른 고객의 요구에 응하는 청소업무 요청은 고용계약관계에 따른 달라질 수 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객의 요구를 다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청소노동자에 업무가 부가됨으로써 청소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세지게 된다. 고용이 불안한 하청 노동자들은 부당한 지시나 업무증가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유럽에서는 계약관계 문제점 해결을 우선으로 하라고 권고한다.<sup>20)</sup>

### 3.1.2. 하청 제도

경쟁의 요인은 하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업은 비용 감소를 위하여 그들의 청소 업무를 점진적으로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 재정적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압박은 노동의 질, 작업 시간, 가격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강한 제약을 받고 있는 청소업체 쪽으로 이전된다, 고객들은 자주 금전적인 것만 보고 영업결정을 내리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적은 관심을 가진다.

#### ■ 인력에 대한 하청의 영향

하청의 현실은 청소부들을 매우 구체적인 직업적 상황으로 이끈다.

제도관련부분(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2009)

## 4) 소결

### (1) 우리는 왜 목천물류센터 조리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말하나

부천물류센터가 아님에도 목천물류센터 조리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비슷한 일이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물류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점에서 조리노동자의 사망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물류센터에는 배송할 물품을 분류하는 노동자 외에도 그들의 식사를 제공할

20) 조흥학,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49쪽

조리(식당)노동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망사건은 목천물류센터에서 일어났으나 비슷한 사건을 벌여질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책임이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방역에 필요한 인원과 비용이 추가로 지불하기보다 기존 인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전가의 문제점이 조리노동자의 사망으로 나타난 것이다. 셋째, 조리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주목하지 않았다.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인 조리노동자들에게 업무 외 노동이 주어지기 쉽다. 그로 인한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강도 강화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임에도 이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와 기업은 조리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선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사례에서도 이는 알 수 있다.

## (2) 위험을 가중시키는 고용구조 개선해야

쿠팡 집단감염의 원인 중 하나가 불안정고용형태가 많다는 점이였다. 사망한 조리노동자도 쿠팡과 위탁 계약한 동원홈푸드에 파견된 노동자였다. 대기업들이 식당운영을 직접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 한국사회에서 이는 단지 쿠팡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이 된 노동자들이 주로 계약직, 일용직 등 단기 기간제 비정규직이었듯이, 목천물류센터 노동자들은 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노동자였다. 둘 다 서로 다른 형태지만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쿠팡에는 다양한 불안정 고용형태가 상존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닥칠 위험에 대한 파악을 기업은 하지 않거나 방기하거나 못하고 있다. 쿠팡 목천물류센터 조리노동자 사망을 계기로 정부는 쿠팡의 고용구조의 문제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위험이 확대되지 않고 기업의 문제해결 방식도 근본적인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코로나19로 업무가 많아져서 사망했거나 감염됐다는 정도로 인식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강도 강화가 '누구의 건강을 위협했나'라는 것으로까지 확장되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낼 수 있다.

## (3)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기업이 변해



쿠팡은 회사에서 쓰러져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직접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기업이 고용형태를 근거로 안전배려의무를 지지 않은 경우는 흔한 사례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이 노동현장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현실에서, 기업의 방역 책임은 작업공간에 대한 방역 의무와 동시에 (코로나에 노동자가 감염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가 그러한 메시지를 알려야 노동자가 희생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쿠팡은 책임 있는 자세는커녕 사망 과정을 확인하는 공적 과정조차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계속해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 아직도 목천물류센터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 유족측이 요구한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역학조사 과정 참여, △고인의 근무당시 '작업환경 보존' 및 '조속한 역학조사 실시'에 대해 조속히 응답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지침(2019.8.1.)> 제9조(평가위원회의운영) 제3항 및 제10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분과통합회의)회의에 직업환경의학.산업위생학.역학 및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쿠팡이 작업환경을 바꾸거나 그에 대한 진술을 해줄 동료노동자들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단호한 태도를 기업에게 보여줘야 쿠팡도 변할 수 있다.

V

**결론**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과제**

## 1. 마치며

코로나19 감염병 대확산이라는 전 세계적인 상황은 생명과 안전의 위협, 사회경제적 위기와 일상의 격변뿐 아니라 대확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충분한 애도도 다 하지 못한 채 밀려오는 충격과 긴장에 안정된 일상과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을 쉽게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위기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위기에 대한 대처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결국은 인간이 저마다의 고유한 존재로서 존엄하며 평등한 삶을 통해 존엄이 지켜진다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 인권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5월, 쿠팡이라는 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사고는 이런 인권의 문제를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터에서의 감염은 노동자와 가족구성원, 지역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기업의 대처와 정부의 조치 및 관리·감독 등은 이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이 일어난 일터의 노동자에게는 직접적이고 우선적인 조치와 지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비롯된 집단감염은 예상할 수 있었던 인재라 할 수밖에 없다. 감염이 발생해도 방역지침을 지킬 수 없는 노동조건이 있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의 기업에 대한 조치는 우선시 되지 않았다. 일터에서의 민주적인 관계 보다는 노동자 개인에게 위험과 책임이 전가되고 있었다. 집단감염 발생 후에도 이에 대한 긴급한 조치는 기업과 정부도 사회공동체도 감염확산에만 집중한 채,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된 노동자이자 시민인 '사람'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재난의 위기 상황에서는 인권의 원칙을 놓치기 쉽다. 인권의 원칙을 놓친다는 것은

결에 있는 사람을 놓친다는 것이다. 결을 놓친다는 것은 연결된 자신을 놓치는 것에 다름없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임시방편으로는 불가능하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인정하는 것, 그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집단감염 사고에 관한 쿠팡이라는 기업의 책임, 국가의 책임 그리고 사회의 책임을 밝혀둔다.

## 2. 기업, 쿠팡의 책임

### 1) 쿠팡의 사회적 책임은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집단감염 사고가 일어난 쿠팡의 노동자들은 그 피해에서 가장 큰 고통은 쿠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과도 대화요구에 대한 응답도 없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문제의 원인을 짚으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과는 재발방지와 치유와 회복을 위한 보상과 지원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잘못을 한 인정하는 이가 없으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도 피해를 겪는 이는 해결의 출발점에도 이를 수 없다. 쿠팡은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멈추고 노동자들과 본 보고서가 묻고 있는 원인에 대해 빠짐없이 대답하며 사과부터 해야만 한다.

### 2) 집단 감염을 불러온 노동환경과 고용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불안정한 노동을 통한 이윤의 추구는 기업에게 사회적 존재의 이유를 물을 수 밖에 없다.

쿠팡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노동환경과 고용구조를 지속하며 테크놀로지 기업이라 자칭하는 경영을 중단하고 지금까지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3)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노동자 존중은 기업의 생명이다.

실태조사에 함께 한 노동자는 쿠팡에서의 노동을 '사람 사냥'이라 표현했다. 안전을 비롯해 유보할 수 없는 권리, 보다 나은 일터를 위한 노동자의 목소리는 매뉴얼에 없는 답변은 기대할 수 없는 채팅창과 소통구조로는 주고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피해에 대한 사과와 근본적인 문제해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보상과 지원에 대해서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노동자를 기업-일터의 평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쿠팡은 일터에서의 평등과 민주적 관계에 기반한 의사소통과 노동자 존중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제제기와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해고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3. 국가의 책임

### 1) 일터에서의 감염에 대한 정부의 예방과 대응

일터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실질적인 예방지침과 위한 관리·감독과 함께 필요한 노동자의 권한과 기업의 의무와 같은 실질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일터에서의 안전유지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그 책임을 어느 조치에서도 물을 수 없거니와 국가 역시 쿠팡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은 찾을 수 없다.

### 2) 감염위기 시 반드시 보장해야 할 노동자의 권리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

국가는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비롯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권리행사에 대해 부당한 대우나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자신과 가족구성원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 필요한 휴가 및 기본생활은 기업과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쿠팡의 노동자 중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감염된 경우 중, 중태에 빠졌음에도 음성반응이 나오자 감염가능성이 없으므로 국가지원의 근거가 없어져 이후 모든 절차와 비용을 노동자가 책임져야만 했다. 또다른 노동자는 십년 가까이 가족으로 살아왔는데도 법적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지원도 없이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왔다.

## 보론

## 보론 1. 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법률적 검토

권영국 쿠팡발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 대표, 정의당 노동본부장

### 가. 사건의 경위

지난 5월 쿠팡이 운영하는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15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5월23일 오후 1시 15분이었다. 이 시각부터 5월25일 오후 7시 근무자들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지할 때까지 무려 54시간 동안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대부분 종사자들은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근무했고 이로 인해 15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졌다.

부천 신선물류센터는 저온물류센터로 상시적인 환기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환기구나 창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으로 400여명의 노동자가 동시간대에 밀집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는 비말에 노출되거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환경이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전산입력을 위한 키보드와 작업대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공용으로 사용했고, 방한복과 방한화도 세탁하지 않은 채 돌려썼다고 증언했다. 관리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며 업무지시를 했고 작업 특성상 근무자들이 근무 필요에 따라 아래 위층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란 의미가 없는 분류였다.

쿠팡은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이틀간이나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문제없다며 직원들을 바이러스가 떠도는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그것도 모자라 연장근무를 시키고 결원 대체를 위해 일용직 모집 문자를 보내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겼다. 더욱이 쿠팡측의 확진자 발생 사실 은폐로 인해 근무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나 동거인에 대한 감염병 전파자가 됐다. 한 근무자의 경우 남편이 전염돼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는 불



행한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센터 폐쇄 후 지난달 2일 업무재개 때까지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다른 센터로의 근무 신청이 금지됐고 다른 업체로의 취업도 불가능했다. 주변에서 받는 눈총 때문에 심한 심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쿠팡은 밀집 근무와 밀폐된 공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없이 업무를 재개했고 감염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회사의 방역 잘못으로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하고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된 근무자에게 산재가 승인되었음에도 쿠팡은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피해자들은 지난 7월 23일과 8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쿠팡 본사를 찾아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쿠팡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자신들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쿠팡 물류센터의 감염병에 취약한 작업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코로나 집단감염에 따른 피해대책을 요구한 계약직 노동자를 산재요양기간 중에 있음에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는 지난 7월 2일 영업을 재개했으나 여전히 형식적인 방역에 그치고 있다는 여러 제보를 받은 바 있고 밀폐되고 밀집된 작업환경과 혼재된 작업 방식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 언제 또다시 코로나 감염 사태가 터질지 근무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쿠팡은 광고를 통해 방역에 철저한 업체인 것처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의 집단감염 사태는 한 사업장에서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는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고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1조 제3항 내지 제29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특별근로감독 내지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곳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당국이 나서서 집단감염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내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함

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 나. 법률 위반의 점

지난 5월 24일과 25일 쿠팡은 부천신선물류센터 내 근무자들 사이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였으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센터 직원 84명 등 152명의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을 초래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것으로 사료된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5월 24일 쿠팡은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한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부천신선물류센터 근무자들을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쿠팡은 부천신선물류센터 소속 근무자들 사이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사업주로서 취해야 할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대한 보건에 관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sup>21)</sup>, 제168조제1호<sup>22)</sup> 위반).

---

2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22)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을 위반한 자

부천신선물류센터는 냉동(영하 18도) 및 냉장(영하 1도)의 저온 창고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에게 전용 방한구를 지급하지 않고, 공용 방한복 및 방한화 등을 불결한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밀폐된 작업장에 환기 및 통풍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20. 5. 24. 사업장 내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근무자들 사이에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급박한 위험 상황 속에서 '즉각' 근무자들의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부천센터 2층 일부 오전조 근무자만 조퇴시킨 다음 2층 작업장 일부와 엘리베이터 등 일부 공간에만 소독 작업을 하였고, 그 외 다른 층은 정상 운영하였다. 소독약이 채 날아가기도 전인 방역 작업 후 불과 3시간 만에 당일 오후조 근무자들을 작업장에 다시 투입시켰다. 근무자들에게 사업장 내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과 사업장 내부에 소독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2020. 5. 24. 오후 5시에 근무자 전원을 2층 작업장 복도에 소집하여 '밀접 접촉' 시킨 다음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호명하여 이들만 조기 퇴근시켰고, 이들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괜찮으니 안심하고 일하라'고 명령하여 사업장 내 추가 확진자 발생을 초래했다. 대다수의 근무자들은 2020. 5. 24.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확진자의 기본적인 동선도 모른 채, 2020. 5. 25. 오후 7시까지 근무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4조제1항, 제168조제1호 위반).

## 2)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점

쿠팡은 방역 당국에 2020. 5. 25. 부천센터 폐쇄시각을 거짓으로 보고하였고, 당일 오후조 근무자들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고, 경기도에 물류센터 직원 명단 제공을 고의적으로 지체하여 방역 당국의 초동대응과 역학조사를 방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sup>23)</sup>, 제79조제1호<sup>24)</sup> 위반).

---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3)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쿠팡은 부천센터 사업장 내 근무자들 사이에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물류센터 직원 84명과 그의 가족과 관계자 68명 등 도합 152명의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을 초래한 것이다(형법 제268조<sup>25</sup>).

## 2. 쿠팡 목천물류센터 식당조리노동자 사망에 대한 법률적 검토

2020년 6월 1일(월)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쿠팡(주) 풀필먼트목천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일하던 30대의 A씨는 점심 배식을 마치고 대걸레질을 하던 도중 쓰러졌다. A씨 외에도 60대의 노동자 2명이 동시에 쓰러졌고, 119가 출동하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A씨는 끝내 사망했다. A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A씨는 천안물류센터에서 협력업체인 동원홈푸드를 통해 쿠팡에서 근무한지 1년이 되는 파견노동자였다. 동원홈푸드는 쿠팡으로부터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주)아람인테크'라는 파견업체노동자로,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담당하는 조리보조원이다. 그가 맡은 업무는 '조리보조업무'와 '청소업무'이다. 코로나19 방역의 목적으로 락스와 오븐크리너 등 독성이 강한 약품을 몇 개 섞어서 수백 명이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약 200석 규모의 홀(약 60평)과 주방(약 20~30평)의 바닥과 테이블, 의자 등을 닦았다고 한다.

### 가. 도급인으로서의 보건조치 의무 위반 및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

---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

####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5)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A씨를 비롯한 조리보조원들은 세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쿠팡이 동원홈푸드에게 위탁을 맡겼을지라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주)아람인테크라는 파견업체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쿠팡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A씨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제 천안노동부의 성분분석 결과, 고인이 사용한 청소약품(희석액)에서 심장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사망할 수 있고, 만성노출 시 심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클로로포름’이 검출되었다. 그 외에도 A씨는 유해화학물질 외에도 음식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흠 및 유해가스(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에 약 1년간 지속적·누적적·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쿠팡은 소독제를 다른 세제와 배합해서 안 된다는 중대본에서 내린 안전지침을 교육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는 등 가스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제63조26), 피해자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27).

#### 나.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방해에 따른 법적 책임

- 
- 26)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27)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쿠팡은 사망사건 이후 용역위탁업체와의 계약해지하고 식당운동을 중단하는 등 사망 발생경위를 조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직원들의 식사를 도시락 배급으로 대체하여서 작업환경을 측정하거나 동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조리원들에 대한 피해 확인이 어렵게 됐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식당에서 락스와 세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앞두고 현장조사를 했다. 그런데 회사는 원래 사용하던 성분이 아닌 물질을 역학조사관에서 제시해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방해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예비조사 당시, 회사는 '락스'와 '오븐크리너' 등의 배합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재현했다. 이후 측정조사에서도 회사는 과거 고인이 실제 사용했던 '오븐크리너'가 아닌 다른 종류의 '오븐크리너'를 역학조사관에게 제시했다. 이에 과거 고인이 실제 사용했던 '오븐크리너'로 측정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sup>28)</sup> 그럼에도 쿠팡은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서 실제 사용하던 것과 다른 물질을 제시해 조사를 방해했다. 조사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제56조의 조사방해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sup>29)</sup>도 성립한다.

---

28)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9)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보론 2. 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보건의학적 검토

최규진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인권위원회

### 사측의 부실한 사전 방역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쿠팡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던 시기는 5월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최고조에 이르던 때라, 고용노동부조차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5가지 약속’을 강조하고 있었다.
- 하지만 쿠팡은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특히 부천신선센터의 경우 환기조차 되지 않는 폐쇄된 작업환경이었고, 셔틀버스, 엘리베이터, 식당, 탈의실(케비넷) 등에서 전혀 거리두기가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비위생적인 방한복 및 장갑을 공동 사용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에 너무나도 취약한 환경이었다.
- 실제 현장의 작업 과정은 아무리 노동자 개인이 철저히 방역에 신경을 쓰더라도 코로나19의 감염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중간 관리자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고강도의 노동을 재촉했으며 이에 따라 땀에 젖어 흘러내리는 마스크를 올리 겨를도 없이 작업대를 계속 이동하며 일을 해야 했다. 작업공간을 이동하는 것 자체로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이동한 작업대에서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키보드를 만져야 하는 상황에 계속 노출됐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마지막 방어 수단인 마스크와 장갑마저 지킬 수 없었던 이러한 쿠팡의 작업장은 보건의학적으로 볼 때,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 일부 노동자의 경우 스스로의 방역을 위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식당과 엘리베이터 심지어 탈의실과 화장실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방한복 및 장갑까지 개인적으로 구비했음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처럼 의료인보다 더 철저히 개인방역에 신경을 썼음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쿠팡 사측의 부실한 방역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사측의 부실한 사후 대응

- 쿠팡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부천신선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은 부실함을 넘어 끊임없이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한 범죄에 가까웠다. 24일 당시 쿠팡측은 전체 직원에게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확진자의 작업일, 작업동선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24일 안심하라며 정상근무를 지시했으며 2시간 연장근무까지 지시했다.
- 25일 확진자가 2명 추가되고 나서야 사측은 저녁 7시 셋다운을 결정했는데, 이 때까지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대부분 종사자들은 사실상 확진자 발생을 비롯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근무했다. 쿠팡은 24일 밀접접촉자를 선별해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말하지만, 27일 전수조사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작업공간과 공용공간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쿠팡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피해

- 결국 쿠팡 부천신선센터 감염자 수는 총 152명으로 쿠팡 노동자 84명, 추가전파 68명의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했다. 이 추가전파로 인한 감염자의 상당수는 노동자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다. 즉 쿠팡의 부실한 방역 조치는 노동자뿐 아니라 그들이 아끼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한 것이다. 심지어 가족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례까지 있었다.
-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들은 격리와 치료 과정을 경험하면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신으로 인해 가족과 지인이 감염된 경우 그 정신적 피해는 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이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정신적 피해 정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회적 관심과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 쿠팡에 대한 시급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 더 큰 문제는 이런 재앙적 결과 이후에도 쿠팡의 작업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400명의 안전감시단을 고용하고, 거액의 임금을 써가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소독물품 관리 등 일부 방역 조치들은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오죽하면, 방역당국 관계자가 "부천 사태에 앞서 5월 19일에 인천 6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만큼 사측은 코로나19 감염우려를 인지해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하지만 쿠팡 부천물류센터는 지난 7월 2일 영업을 재개했으나 여전히 형식적인 방역에 그치고 있어 보인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쿠팡의 작업환경과 집단감염 이후의 대응 상당부분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명백히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금도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쿠팡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코로나 19 집단감염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